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 분석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주 경 민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 분석

지도교수 조 동 준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주 경 민

주경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백 창 재 (인)

부위원장 신 욱 희 (인)

위 원 조 동 준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68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과정을 검토한다. 1970년대 전반에 걸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추진 과정은 특성상 정황 증거와 추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의 특수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지속적으로 조명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추진 결정은 데탕트로 인하여 국제 관계가 급변하던 상황 속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박정희의 핵 개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NPT 가입 요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과 핵우산 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말까지 핵 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NPT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박정희 정부는 왜 NPT에 가입했는가?”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NPT에 서명하였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PT 비준을 미뤘었다. 1975년 2월 포드행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핵 개발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75년 4월 23일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조약 서명 후 7년 만에 NPT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재처리 능력, 농축 시설 등을 갖추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핵무기의 운반체제가 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NPT 가입은 핵 비확산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 가입 비핵국의 핵 보유 노력을 포기할 것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핵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과 IAEA의 사찰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핵 개발을 시도한 것은 미국의 NPT 가입 압박으로 인해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는 기존의 주장으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박정희 정부가 NPT를 가입을 결정한 요인에 NPT 가입을 통해 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1968년부터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기밀해제 문건을 분석하여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에 어떠한 요인이 고려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재확신과 핵우산 제공, 제재초지로 인해 NPT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왈츠(Waltz)의 주장처럼, 국가가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부분이 안보와 결부되어 있다면, 국제정치 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안보상의 이유로 핵무기를 추구하던 국가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의 안보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조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기밀해제 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NPT 가입과 관련된 기밀 해제 문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과 NPT 가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NPT 체제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의 경우 즉 NPT 가입이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합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박정희, NPT, 핵확산, 핵비확산, 핵개발, 사료분석

학 번: 2014-20160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기존 연구의 검토	4
3. 연구 방법	12
4. 논문 구성	15
II. 한국의 핵무장 시도와 미국의 비확산 압박	17
1. 한국의 안보불안	19
1) 1960년대 북한의 위협	20
2) 미국으로부터 버림의 위협	23
3) 닉슨 독트린의 충격과 방기의 위협	26
2. 한국의 핵무장	30
1) 핵무장 결정시점	30
2) 한국의 핵무장 추진 현황	33
3. 미국의 비확산 노력	36
1)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차단	37
2) NPT 가입 압박	40
III. 한국의 대응	45
1. 부처별 입장	45
2. 핵능력 강화 방안으로 NPT 가입안 채택	49
IV. NPT 위장막 아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압박	52
1. 핵무기 제조 능력 강화	52
1) 이중적 사용(dual-use) 핵 기반 시설 강화	55

(1) 원자력 시설의 증강	55
(2) 연구 인력의 확보	56
2) 핵물질 확보	57
3) 탄도 미사일 강화	58
2. 핵 개발 탄로와 미국의 핵포기 압박	62
V. 결론	67
1. 연구 결과 정리	67
2. 연구함의: NPT 체제의 악용 가능성	68
참고문헌	72
Abstract	86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¹⁾ 가입과 핵 포기 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하 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의 실질적인 핵포기 시점은 78년 이후로 추정된다.²⁾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된 후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핵 개발은 데탕트로 인한 국제관계 급변의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써 높이 평가받아왔다. 따라서 박정희의 핵

1) NPT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국제 조약이다. NPT는 1968년 6월, 당시 핵무기 보유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이 서명하여 1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UN) 군축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같은 해 7월 1일에 40개국이 이를 비준하였고 1970년 3월 5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NPT는 핵무기 5개국에게는 핵군축을 요구하는 한편, 핵무기 비 보유국에게는 핵무기의 제조 및 취득을 금지하고 IAEA 사찰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기술의 확산을 막고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초가 되어왔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金江寧,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안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Vol. 35, No. 1 (1995), pp. 63-80. 참조.

2)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Peter Hayes: Chung-In Moon, "Park Chung Hee, the CIA & the Bomb", *Global Asia*, Vol. 6. No. 3 (September, 2011), pp. 46-58. 참조. 이 연구에서 박정희의 핵 개발 포기 시점은 78년으로 70년대 후반까지 박정희의 핵 개발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발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박정희의 NPT 가입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³⁾ 기존 대다수의 연구에서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며 핵 개발 포기과 동일시되었을 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NPT에 서명하였지만 북한이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PT 비준을 미뤘다. 1975년 전까지 포드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975년 2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핵 개발을 무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포드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 안보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NPT에 가입하는 것이 ‘극도로’(extreme)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박정희 정부에게 전달하였다.⁴⁾ 그 결과 1975년 4월 23일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

3) 박정희의 핵 개발 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로는 조철호,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한미관계," 『평화연구』, Vol. 9 (December 2000), pp. 189-207; 민병원,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이중적 정책에 관한 반(反)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August 2004), pp. 127-165; 조철호,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핵개발," 『역사비평』, Vol. 80 (August 2007), pp. 356-373; 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 Statecraft* (December, 2001), pp. 53-80; Sung-Gul Hong, "The Search for Deterrence: Park's Nuclear Option," in Pyung-Kook Kim;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483-510; Peter Hayes ; Chung-In Moon, 2011, pp. 46-58; Lyong Choi,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1975-76," *Cold War History*, Vol. 14, No. 1 (January 2014), pp. 71-90;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eds.),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13). 등이 있다.

4)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W. R. Smyser, "Development of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February 28, 1975, White House, DDRS.; 박원근,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서울대학교

지면서 대한민국은 조약 서명 후 7년 만에 NPT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과 핵 포기의 시기적 불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NPT 가입’은 곧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NPT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NPT가 핵 비확산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써 ‘가입 비핵국의 핵 보유 노력을 포기할 것’을 강제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핵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이 자세히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NPT는 핵무기의 제조 기술의 장벽을 높이고 핵물질의 이전을 막고 IAEA의 안전조치를 활용하여 핵무기의 확산 속도를 지연해왔다.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측면에서 국제적 안보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고⁶⁾ 실제로 성공적으로 핵확산을 저지해왔다.⁷⁾

국제문제연구소(편), 『데탕트와 박정희』, (서울: 논형, 2011), pp 94-95. 에서 재인용

- 5) 박병인: 이수훈,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유라시아 연구』, Vol. 10, No. 3 (2013), p. 65. 구체적으로 NPT는 전문 1~3항과 제 1, 2조에서 핵국과 비핵국의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확산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NPT 2조는 비핵국의 핵무기와 통제권의 접수, 핵무기의 제조와 획득 및 이를 위한 지원 요청을 금지하는 의무사항 일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3조 2항에서는 핵물질 이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핵물질과 핵무기 장비의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6조에서는 기존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NPT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핵무기 획득을 포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조약 당사국이 조속한 일자 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NPT에 가입한 비핵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NPT 가입 후에는 자유로운 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6)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KWP)』, Vol. 27, No. 1 (2011), pp. 69-71.
- 7) 유엔 안보리의 조사 및 제재조치는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흔히 구소련 3국)은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 비록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제로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의 숫자는 한자리에 불과하다는 점도 NPT 체제 하에서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에 본 논문은 1968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제반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던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결정과정과 지속적인 핵 개발 시도를 탐구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하게 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박정희 정부는 왜 NPT에 가입했는가?’이다. 이를 통해 NPT 체제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의 경우⁸⁾ 즉 NPT 가입이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합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연구 의의가 있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본고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NPT를 가입한 시기와 핵을 포기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NPT 가입과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중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NPT 가입에 관한 연구’, ‘NPT 가입과 핵 포기를 동일시하는 연구’, ‘NPT 체제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사례에 관한 연구’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가 되는 ‘NPT 체제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사례에 관한 연구’의 한계와 함의에 주목하였다.

우선 기존의 국내 연구 중 ‘NPT 가입’이라는 사실 자체에만 주목하여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NPT 가입은 주로 비확산 체제의 하위 개념으로써 다루어지거나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부차적으로 언급되었다. NPT 가입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의 대다수도 NPT의 ‘일반화(universalization)’⁹⁾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

보여주는 증거이다.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Vol. 14, No. 1 (2009), p. 99.

8) 북한과 이라크의 경우 NPT 회원국으로서 IAEA의 사찰을 피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는 정책보고서가 주류를 이룬다. 이 보고서들은 핵확산이 각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핵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합리화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핵확산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NPT 가입이나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거나 위 국가들이 NPT를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NPT의 핵 비확산 개념의 이원화를 지적하는 개념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개념적 연구들은 NPT가 구상 초기부터 모든 국가의 핵무기 생산을 중지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생산에는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PT가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에게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조약이 두 국가군의 차이를 영속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NPT 가입에 따른 핵비보유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언의 관점에서 NPT 가입을 주로 논의해왔던 것이다.

NPT 가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그 관점에 대해서 한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연구 대상이 북한의 사례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NPT 가입 사실에 대한 분석도 그 사실 자체로써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안보 정책과 연결시켜 설명한 연구가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다른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NPT 가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박홍영과 허만호의 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 안보 정책의 제약과 기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NPT 가입 및 탈퇴시기를 살펴보고 있다.¹⁰⁾

두 번째로, NPT 가입과 핵 포기를 동일시하는 연구의 경우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NPT가 그 조

9) NPT의 일반화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NPT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박홍영; 허만호,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 안보정책의 제약과 기회 고찰: 북한의 NPT 가입 및 탈퇴 시기(1989-1993) 사례,” 『국제지역연구』, Vol. 11, No. 3 (2002), pp. 61-77.

약문 상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핵무기 획득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NPT가 실질적으로 핵 포기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와 별개로 찬반이 뚜렷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NPT가 실질적인 핵 포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이후로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의 의지 및 노력을 억제해온 것이 NPT 같은 군비통제 및 군축조약, 국제 군비감시 조치, 핵물질 공급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기타 핵에 관한 표준을 정한 협약 등이 진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핵 비확산 체제를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소위 핵 1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과거의 부산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 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원하는 안보적인 안정 상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핵 비확산 체제가 많은 국가들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완화시키지 못하며, 그 결과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안보 동기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처럼 하나의 주를 이루어왔지만 NPT 가입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NPT 가입을 사실상 핵 포기 와 동일하게 여겨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핵 포기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한 국가가 NPT를 가입한다는 사실이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핵 비확산체제가 규범의 확산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높임으로써 핵무기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고 안보 증진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¹⁾

NPT가 등장한 후 몇 가지 중요한 비확산 성공사례는 NPT가 핵 포기를 의미한다는 연구들의 주된 근거가 된다.¹²⁾ 제 1차 걸프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엔 안보리의 조사 및 제재 조치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비밀리에 추진 중이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소련의

11) 조동준, 2011, pp. 68-70.

12) 현재까지 총 33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해운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서 9개의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정 또는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24개국은 비핵국가로써 NPT에 가입하여 핵무기 개발 옵션을 폐기하였다.

붕괴 이후에 자연스럽게 핵무기 승계국이 되었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파괴에 동의하고 핵 비확산 조약에 가담한 사례들이다. 이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도 비확산의 압박으로 인해 핵무기 추구를 중단한 사례이다.¹³⁾ 한 편 2003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직후에 이루어진 수천기의 원심분리기가 선적된 선박의 나포 이후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을 자제했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례이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NPT 가입과 핵 포기를 동일시하고 있다.¹⁴⁾ 국외 연구 중 NPT 가입과 핵 포기를 동일시하는 연구들은 NPT가 한 국가에게 비확산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여 직접적으로 핵 포기로 귀결시킨다고 주장했다.¹⁵⁾ 기존의 연구들은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각각의 사례가 동일한 핵 포기 경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가능성과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거나 국제 사회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기대 보상, 혹은 국내 정치적 변화가 핵 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안보위협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 이익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많다.¹⁶⁾ 예를 들어 한인택(2011)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13) 조동준, 2011, p. 53.

14) 정옥임, "국제레짐의 한계와 패권: 미 부시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 『국제지역연구』, Vol. 16, No. 2 (2006), pp. 27-52; 조동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확산 사례 연구," 윤영관·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파주: 한울, 2008), pp. 93-126; 조동준, "비확산과 핵확산: 이론적 시각," 백진현 (편), 『핵 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한인택, "핵 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국과 국제정치』, Vol. 27, No. 1 (2011), pp. 83-108.

15) Rebecca Johnson, "Rethinking the NPT's Role in Security: 2010 and Beyond", *International Affairs*, Vol. 86, No. 2 (March 2010), pp. 429-445; Andrew J. Coe; Jane Vaynman, "Collusion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7, No. 4 (October 2015), pp. 983-997.

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이익을 고려하여 핵을 포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또한 Liberman(2001)은 안보위협감소가 핵 포기를 낳았다는 설명이 표면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보위협감소는 기껏해야 허용적 변인(permissive cause)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¹⁸⁾

NPT 가입 후 핵 개발 수행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북한, 이라크, 이란 등에 특수한 국가의 사례에 집중되었을 뿐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것은 우선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의 핵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NPT 가입 후 핵 개발을 수행한 경험적인 사례가 적었다. 이러한 사례가 적은 이유는 첫 번째로 NPT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안보 불안이 감소함에 따라 핵 개발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NPT 체제가 평화적 핵 능력을 목적으로 사용된 핵 물질의 전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의 자유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핵 개발은 국가 간의 외교,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제재를 받아야 할 문제라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6) 이러한 연구들로는 Peter Liberman, "The Rise and Fall of the South African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2001), pp. 45-86; Helen E. Purkit; Stephen F. Burgess; Peter Liberman, "South Africa's Nuclear Decis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2002), pp. 186-194.; Purkitt, Helen E; Stephen F. Burgess, *South Afric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장성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및 해체 사례 연구", 『동아시아연구』, Vol. 11, (2005) pp. 125-141; 조동준, 2008, pp. 93-126; Stefanus J. Schoeman, "South Afric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me (Excerpts from Amb. Schoeman's Presentation, "International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JPI Peace Net*, Vol. 2009, No. 12 (2009), pp. 1-2.

17) 한인택, 2011, pp. 88-108.

18) Peter Libermann, 2001, pp. 45-86.

기존 연구에 따르면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국가들은 국제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소국이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강대국들의 경우 1960년대까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NPT 가입 후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국가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NPT 가입 후 핵개발을 시도했던 국가로써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라크, 이란, 북한의 경우 모두 국제질서 하에서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NPT 가입 후 핵무기를 추구한 사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북한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핵확산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특수한 행위자로서 북한의 사례 자체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따라서 NPT 혹은 비확산과 같은 거시적이고 일관적인 분석틀에 의거하기 보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사후적 분석에 그쳤을 뿐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려는 작업은 진척되지 못했다.²⁰⁾ 기존 연구 중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교 연구를 통해 설정한 가설을 북한에 적용하는 귀납적 연구방식으로 이를 극복하려 시도한 연구도 있다.

그 중 황지환(2009)의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다루고 있다.²¹⁾ 그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례가 비확산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기술 획득을 추구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기술을 확보한 순간 NPT를 탈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모두 안보 증진의 관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9)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Vol. 45, No. 3 (2005)이 있다.

20)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0, No. 3 (2012), p. 226.

21) 황지환, 2009, pp. 59-83.

비확산체제의 감시활동으로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NPT가 약소국의 핵확산을 막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써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란이 북한의 전례를 따라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지적되었다.²²⁾

선행된 국외 연구 중 Joseph F. Pilat(1992)는 이라크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와 조약이 핵 비확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³⁾ 그는 걸프 전 이후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하였다. 그는 IAEA의 안전조치(Safeguard)가 핵무기로 가는 통로중 하나인 평화적 핵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핵물질의 전용만을 감지(detect)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감시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현실주의 안보모델에 기초에 핵무기 개발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들이 다른 재래식 방식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그러므로 안보적인 관점에서 NPT 체제하에서 핵 개발을 시도했던 국가들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이유는 모두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경우 안보적인 위협이 해소

22) 이란이 북한의 전례를 따라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외교안보연구원. 황지환, 2009 를 참고.

23) Joseph F. Pilat, "Iraq and the Futur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Roles of Inspections and Treaties." *Science (New York, N.Y.)*, Vol. 255, No. 5049 (March 1992), pp. 1224-1229.

24)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1997), pp. 140-161; Richard K. Betts, "Paranoids, Pygmies, Pariahs & Nonproliferation," *Foreign Policy*, No. 26 (1977), pp. 157-183; Bradley A. Thayer,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Util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ecurity studies*, Vol. 4, No. 3 (March 1995), pp. 463-519; Benjamin Frankel; Zachary S. Davis,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Theory and Policy," *Security Studies*, Vol. 2, No. 3-4 (June 1993), pp. 1-3.

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북한의 경우도 미국의 위협에 대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히 비확산체제의 감시 활동으로 인해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NPT 가입 하에서 핵개발을 시도했던 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은 크게 비확산체제가 약소국의 핵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로써 한국의 핵포기 사례를 다루는 Bergner(2012)의 연구는 한국의 NPT 가입이 핵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로써 NPT를 비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1970년대 후반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때 NPT와 IAEA의 안전 조치를 위장막으로 삼았으며 NPT가 한국의 핵 개발에 제약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핵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핵포기는 미국과의 관계유지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경제 개발에 추진력을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²⁵⁾

그의 연구는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핵 개발과 NPT 가입을 연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한국의 NPT 가입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료에 기반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밀해제 문건을 중심으로 NPT 가입 과정에서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입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핵 비확산 체제는 이를 구성하는 다자 및 양자 조약, 각종 동맹 및 안보조약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²⁶⁾ 이러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비롯한 노력의 중심에는 NPT가 자리했다. NPT는 핵 비확산체제를 태동시킨 시발점이자 체제 유지를 위한 초석이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25) Jonathan D. Bergner, "Going Nuclear: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Matter?," *Comparative Strategy*, Vol. 31, No. 1 (2012), pp. 84-102.

26) C. Wing, *Nuclear Weapons: The Challenges Ahead*, (Washington, D.C.: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007), pp. 4-5.

위한 가장 전면적인 노력이다.²⁷⁾ NPT는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제외한 전 세계의 주권국가가 모두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는 점을 볼 때 여타 국제 협약 체제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국제안보에 전반에 NPT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에서 NPT 가입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을 미국의 압박이라는 외부결정적인 시각으로만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을 사료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NPT가 핵포기를 의미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합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로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단일 사례 연구라는 측면에서 변수의 설명력과 인과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²⁹⁾ 다만 본 논문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례 연구의 경우 변수 중심의 접근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현상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사례 중심적 접근법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이라는 사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변수의 설명력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사실 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는 단일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27) Bergner, 2012, pp. 84-102.

28) 류광철, “NPT 체제의 미래: 제 7 차 NPT 평가회의 결과 및 평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외교안보연구원.

29)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의 경우 관찰 사례의 수가 증가하면 변수의 설명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수 사례 연구 전략이 변수의 설명력 확보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논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례 연구 전략에 대해서는 Gary King; Robert O. Keohane;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08-230.을 참조.

본 연구에서는 1968년부터 1980년의 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과 핵 개발 및 포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NPT 가입을 결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을 언제까지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정하기 위하여 핵개발 포기시점을 언제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종료 시점은 통일되지 못했다.³⁰⁾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이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최근에 기밀 해제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의 실질적인 핵 포기 시점은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78년 이후이다.³¹⁾ 그러므로 사실상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히 종료된 것은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된 후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1968년부터 1980년까지로 설정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핵 개발 시도의 정황을 누락시키지 않게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밀 해제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문헌연구 (documentary research)’를 수행했다. 문헌연구는 참여관찰이나 인터뷰와 같은 논리로 사건을 더 이상 관찰할 수 없고 정보 제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연구에 유용하다.³²⁾ 역사적 연구방법은 적절한 사료를 탐색함으로써

30) 김창수(1998), 조철호(2002)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1977년까지 지속되었다고 간주한다. 반면 돈 오퍼도퍼(Don Oferdofer)는 박정희의 핵개발이 공식적으로는 1977년에 중단되었지만 사실상 1979년 19월 26일 서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1)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는 Peter Hayes; Chung-In Moon, 2011. 참조

32) Sharan B. Merriam (2nd eds.),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8), pp. 120-127; Jennifer Platt, "Evidence and Proof in Documentary Research," in John A. Hall; Joseph M. Bryant (eds.),

어떠한 증거가 더욱 확실한 증거인지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어떠한 조건에서 일련의 사건이 전개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사건 간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³³⁾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행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한 요인이 비단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가입 압박만이 아니라 핵 능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밀 해제 문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료는 2008년 한국 외교 사료관이 공개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이다. 해당 사료에는 NPT 가입 과정과 이를 둘러싼 관계 부처의 입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 한국의 NPT 가입과 관련된 문서 뿐 아니라 NPT 평가회의³⁴⁾, 타국의 NPT 비준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된 시간적 범위는 기밀해제 된 CIA 보고서에 기초하여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을 시도했을 것으로 논의되는 1974년대 초부터 핵개발의 잠정적 종료로 간주되는 1970년대 후반 시기로 설정하였다. 2011년 기밀해제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과 설득으로 1976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최소 1978년까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핵개발 관련 사료가 기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개발의 시기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1970년 초 이전의 시기도 일부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한국의 핵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관련 2차 문헌과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정책 결정자들의 회고록을 바탕으

Historical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2005), p.182.; 엄정식. "이문사회학편: 박정희 정부의 자주적 무기개발과 무기도입 다변화 전략." 『공사논문집』, Vol. 64, No.2 (2013), p 3.

33) 요나톤 모세스; 투르본 크누트센, 『정치학 연구 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서울: 을유문화사, 2011), pp. 199-205.

34) 제 1, 2, 3, 4차 NPT 평가회의에 관한 논문으로 김태우,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핵의 남북문제," 『국방논집』, Vol. 14 (1991); 신재곤, "핵에너지와 핵확산금지조약", 『국방논집』, Vol. 17 (1992); Joseph S. Nye, "Maintaining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George H. Quester (eds.), *Nuclear Proliferation: Breaking the Chain*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1) 참조.

로 한 합리적 추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물의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NPT 및 핵 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수가 적다는 점으로 인해 통계와 같은 정량적인 방법의 활용은 어렵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활용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박정희정부가 NPT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핵 개발을 시도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약소국의 핵 비확산 문제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4.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을 결정하고 진행한 원인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핍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NPT에 가입하게 되는 외부적 상황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이 실질적인 핵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국의 기밀해제 문건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는 1976년 카터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 내 미군 핵무기 철수 의도가 공개되면서 암암리에 핵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³⁵⁾ 실제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NPT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핵 개발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가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고려할 때 핵능력 강화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NPT에 가입한 이후 이를 위장막 삼아 핵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NPT 가입 이후 핵 능력

35) 돈 오퍼도퍼(Don Oferdofer)는 박정희의 핵개발이 공식적으로는 1977년에 중단되었지만 사실상 1979년 19월 26일 서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가 미국 정부에 발각되고 미국 정부가 핵 포기를 압박함에 따라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핵 개발 포기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밝히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한국의 핵무장 시도와 미국의 비확산 압박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NPT 가입을 결정하게 된 주된 원인을 미국 정부의 핵확산을 저지하고자하는 노력에서 찾는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형태의 노력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한다. 첫째, 미국 정부의 안보 공약에 대한 재확신이다.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신시켜주었기 때문에 NPT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박정희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의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이다.³⁶⁾

36)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포기에 미국의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경향은 포드 행정부의 기밀해제 문건에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당시 포드 행정부의 기밀해제 문건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개발 계획이 우리의 안보 공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박정희의 핵개발 지속 여부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불안을 느낀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 안보 공약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은 Memorandum for George S. Springsteen, "ROK Weapons Plans", March 3, 197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a, b. Korea (1)-(6), GFL; Memorandum for General Scowcroft from W.R. Smyser, "Your Meeting with our Ambassador to South Korea." March 26, 197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a.b. Korea (1)-(6), GFL;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Jan M. Lodal and Dave Elliott, "Approach to South Korea on Reprocessing," July 24, 197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c.d. Korea (7)-(14), GFL;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1975,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c.d. Korea (7)-(14), GFL 참조; 박원근,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데탕트와 박정희』, (서울: 논형, 2011), pp. 95-96 에서 재인용

기존의 대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을 시도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침입 가능성,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의 철수로 인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 국방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³⁷⁾ 요컨대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인식하는 혹은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주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이 해소되었고 따라서 핵무기 포기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보장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할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적으로 안보 위협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침내 핵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³⁸⁾

일반적으로 잠재적 핵개발국의 핵확산 속도는 동맹의 형태로 안보 약속이 제공되거나 NPT의 안전보장 조치와 같은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들이 제공될 경우에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한 국가가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안보와 결부되어 있다면 국제정치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³⁹⁾ 일반적으로 NPT 가입은 실질적으로 핵을 포

37) 당시 박정희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Vol. 22 (2008);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2004); 조동준,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하영선 편,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2015). 참조

38) 특정 연구는 미국의 비확산 노력 외에도 강대국 중심의 평화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안보 불안을 해소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Sangsun Shim, “The Causes of South Korea's Nuclear Choices: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13, pp. 253-256.

39) Kenneth Waltz, “Peace, Stability, and Nuclear Weapons,” *IGCC Policy*

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했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안보 보장은 지속적인 주한 미군 철수 논의로 인하여 안보적인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가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장을 결정한 안보적인 상황이 어떠한였고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박정희 정부의 핵 무장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인식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통해 핵을 포기할 만큼 미국 정부의 안보 보장에 대한 확약과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1. 한국의 안보불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의 시기는 박정희 정부에게 ‘자주국방’과 ‘핵무기개발’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만큼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미소 간 ‘데탕트’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1975년 월남 패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⁴⁰⁾ 등을 비롯한 북한의 대남 침공 의지를 부추길 만한 일들이 발생한 사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⁴¹⁾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Aug. 1995), pp. 5-6.

40)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가지치기를 위해 일하던 남한의 노무자 5명과 작업을 지시하던 보니파스(Arthur Bonifas) 대위를 북한군 장교와 북한의 30여명의 병력이 때려죽인 사건이다.

41) 민병원,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 1 (2004), pp. 127-128.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크게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태도 변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박정희 정부에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문제를 자체적인 국방 수단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 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월남 패망 후 미중이 관계 개선을 시도함에 따라 발생한 군사적 공백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더욱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 1960년대 북한의 위협

1970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⁴²⁾을 어떠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다양하다.⁴³⁾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⁴⁴⁾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연두에 이루어진 기자

42) 60년대 후반 북한 측에 의한 주요 도발 사건은 68년 1월 21일 북한군 무장계 릴라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 바로 이틀 후에 발발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9년 4월 미군 정보기 EC-121기 격추사건을 들 수 있다. 김진기,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Vol. 58 (2011), p. 101

43) 박정희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반공적 측면에서 과대선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혹은 미국에 대한 안보 협상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장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44) 당시 박정희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 역사논총』 (2008), p. 22;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2004); 조동준,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하영선 편,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2015) 참조

회견에서 “북한 단독의 침공에 대해서는 우리 단독의 힘으로도 능히 이를 억제하고 분쇄할 수 있는 힘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자체적 군사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는 점을 드러냈다.⁴⁵⁾

실제로 1960년대 들어 북한의 침투는 1,011건, 국지 도발은 329건 총 1340건으로 남북 분단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⁴⁶⁾ 뿐만 아니라 1968년에는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침투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게 만들었던 계기인 1.21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북한의 특수 부대인 124 군부대 소속 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폭파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태 이후 박정희 정부가 같은 해 4월 1일 이 사태를 계기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박정희 정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부는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건들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의 중요성과 투자의지가 명확해지게 된 것이다.⁴⁷⁾

박정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당시 한국 정부의 군사력 수준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당시 한국군의 전체전력 수준은 북한군에 비해 50.8% 정도에 불과했다.⁴⁸⁾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수산업 능력을 성

45) 조철호, "박정희의 자주 국방과 핵개발", 『역사비평』, Vol. 80 (가을 2007), pp. 358-359.

46) 국방부, 『국방백서 2014』 (서울: 국방부, 2014), p. 251; 김지일, "한국의 자주국방과 미사일 개발", 『전략연구』, Vol. 23, No. 3 (2016), pp. 205-218.에서 재인용

47) 김지일, 2016, pp. 210-211.

48) 오원철,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서울: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p. 372; 오원철, 『(경제비사)한국형 경제건설 : 엔지니어링 어프로

장시커 1970년 차·자주포·장갑차 등 주요 지상무기체계와 잠수정·고속정 등의 함정을 건조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었다. 실제로 이러한 북한과의 전력 차와 1970년대 초 안보위기 상황에 대하여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은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략무기 개발 담당자 중 하나였던 이경서 박사는 북한은 40km 사거리 유도탄이 장착된 고속정을 갖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15km 사거리 포를 가진 구축함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홍재학 박사는 한국에 비해 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북한이 상당한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⁴⁹⁾

두 번째로 단순히 군사적 열세만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언제라도 침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은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69년 후반 연설에서부터 이러한 사건들의 북한의 남침 의지를 보여주는 포석이 있음을 지적한데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북한은 1968년 무장 세력을 한국 내 게릴라로 이식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후 69년까지 북한이 무장 침투를 줄이고 평화공세를 벌이자 박정희 정부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는데 이러한 평화공세가 1950년의 북한의 평화공세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침략을 시작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군사적 열세의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이 더욱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자주적인 국방을 모색할 필요성을 재차 환기 시킨 것이다.⁵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0월 1일 “제 21회 국군의 날 유시”에서 1960년대 북한의 도발 행동

치』(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p. 277. 당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교 자료는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참조. 당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68년 푸에블로호 위기 이후부터 지상군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가 흐름 또한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49) 신옥희, “데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 박정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가?”, 『세계정치 14(데탕트와 박정희)』 (2010), pp. 41-67, p. 59.

50) 조동준, 2014, p. 29.

들을 70년대 남침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공작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⁵¹⁾

2) 미국으로부터 버림의 위험

전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가 안보적으로 불안을 느꼈던 주요한 원인 중 첫 번째는 북한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이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안보적 불안을 조성했던 것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실제로 1971년 초반에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더욱 증가된 수준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전까지 북한의 남침을 오판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관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남침은 오판이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²⁾ 궁극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대한 공약과 원조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안보 및 정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일련의 사건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태도를 인식했던 사건 중 첫 번째는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이다. 물론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북한이 무장 세력을 조직적으로 남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불안감을 조성한 핵심적인 이유는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상반된 대처였다.

우선 박정희는 1·21 사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원했으나 미국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⁵³⁾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는 심지어 북

51) 박정희, 1968, “제 21회 국군의 날 유시”, 10월 1일.

52) 조동준, 2014, p. 202.

53) 당시 안보문제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고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위협 인식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

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이 보복의사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⁵⁴⁾ 그러나 이틀 후에 발생한 프에블로호 피랍 사건에서는 엔터 프라이즈 호를 원산만으로 급파하고 유엔안보리를 소집하고 소련에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프에블로호 사건과 1.21 사태에 대한 대응의 온도 차이가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참여 없이 북한과 직접 비밀 회담을 가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였고 이후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 김광협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판문점에서 미국 정부와 직접 대화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이어 미국 정부 또한 국무부와 유엔대표부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 결과로 미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 2월 2일부터 회담이 개시되어 7일까지 계속되었고 이러한 북한과 미국 정부의 비밀 직접 회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미국정부에게 전달하였다.⁵⁵⁾ 이 문제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당사자로 배제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에게 1·21 사

다. 조갑제, 『박정희 10권(10월의 결단)』, (서울: 조갑제닷컴, 2007), p.159; 김정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서울: 중앙일보사, 1990), p. 318.

54) 조동준, 2014 p. 14;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pp. 32-41;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2001) Vol. 113, pp. 181-185.

55) 신윙희, 2011, p. 54, '프에블로호' 사건과 한미동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양성철 ; 문정인. "제 1부: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프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단일호』 (1988), pp. 55-83; 윤민재. "푸에블로호 사건과 한미관계." 『사회와 역사』, Vol. 85 (March 2010), pp. 239-270; Chae-Jin Lee; Hideo Sato,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New York: Praeger, 1982)을 참조.

태의 우선적 처리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행정부는 미군 승무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배제하고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와 존슨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존슨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전 지구적 맥락에서 인식하려는 것과 달리 이를 북한과의 대치라는 견지에서 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부적절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⁵⁶⁾ 따라서 이 시기의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위기의식은 비단 북한의 대남 무장 게릴라 활동에 대한 경계 의식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⁵⁷⁾

요컨대 60년대 말의 이러한 두 가지 북한의 소규모 도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의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불신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따라서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영원히 그리고 전적으로 미국 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제전략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자주국방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⁸⁾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결정은 1. 21 사태가 발생하고 푸에블로호가 나포 된 직후 서울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국방의 주체성을 주장한데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남이 돕는

56) 한미관계연구회 (역), U.S. Congress, 『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서울: 실천문학사, 1986), p. 61; 신옥희, 2010, p. 62.

57) 구라타 히데야. "박정희 '자주국방론'과 미·일 '한국조항'." 『한일공동연구총서』 (2002), p. 148.

58) 신옥희, 2010, pp. 62-64, 박정희와 미국 정부의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같은 논문 참조.

것은 어디까지나 도움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국방의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 역량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⁵⁹⁾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여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어떠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3) 닉슨 독트린의 충격과 방기의 위협

박정희 정부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더욱 가시화 시킨 것은 ‘괌 독트린⁶⁰⁾(이하 ‘닉슨독트린’으로 표기)의 발표였다. 닉슨 독트린의 천명 후 미

59) 조갑제,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62년 생애의 62개 장면』 (서울: 기파랑, 2009), p. 459; 차상철, “박정희와 1970 년대의 한미동맹”, 『군사』, Vol. 75 (2010), pp. 331-356, p. 337에서 재인용.

60) 닉슨 독트린이란 베트남 정책 실패 후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동맹국 정책의 기초이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괌을 방문 하던 중 태평양의 미 해군기지 수행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존하여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전쟁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정책은 반드시 피해야만”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후 미국이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며, 아시아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 각국과 체결한 군사동맹 등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준수하고 핵우산 제공, 전쟁 발발 시 해·공군력을 지원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하나 지상전에 관해서는 아시아 각국 스스로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이다. 홍석률, “닉슨 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 Issue 26 (December 2006), pp. 71-72. 닉슨 독트린의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Robert S.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참조. 닉슨 독트린의 아시아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Joo-Hong Nam.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London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Earl C. Ravenal, "The Nixon Doctrine and Our Asian Commitments." *Foreign Affairs*, Vol. 49, No. 2 (1971), pp.

국의 베트남 수행 전략이 전환된 것은 그 자체로 박정희 정부에게도 분명한 위협을 불러일으켰으나 처음부터 중대한 안보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닉슨 독트린이 곧 주한 미군의 감축으로 연계되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닉슨 독트린을 천명하기 전부터 주한 미군의 감축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⁶¹⁾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1970년 3월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닉슨 독트린을 안보 위협으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69년 실시된 한미 합동훈련(Focus Retina) 이후이다. 이 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방어를 '기동성 있는 방어(mobile defense)'를 응용한 전술로 바꾸려고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⁶²⁾ 박정희 정부는 이 훈련으로 인해 미국이 지상군을 감축하고 이를 원거리 지원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은 동맹국의 조약상의 의무 이행과 '핵우산' 제공을 서약하고 아시아의 군사적 개입(commitment)의 후퇴와 아시아 각국의 '자조'를 기조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오키나와의 반환 요구가 갈수록 구체화되자 박정희 정부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오키나와의 반환이 미군의 동북아시아 전개 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1969년 7월에 발표된 '아시아 방위의 아시아화'를 목표로 한 닉슨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정책을 결정하였다. 내부 논의를 거쳐 1970년 3월 20일 주한 미군 2개 사단 중

201-217. 참조.

61) 1969년 2월 작성된 '국가안보연구 비망록(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NSSM) 27'을 통하여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수행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 미군 2개 사단을 모두 철수하는 방안, 1개 사단만을 철수하는 방안, 몇 개의 여단만을 남기는 방안 등을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62) 이는 미국이 한국의 방어 전략을 연루의 가능성이 높은 지상군 보다 공군력 및 해군력의 기동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개 사단 2만 병력을 감축하고, 대신 한국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 군사원조 정책인 ‘국가안보결정비망록(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NSSM) 48’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이를 1970년 3월에 공식적으로 윌리엄 포터(William J. Porter)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하여 박 대통령에게 통보하였다.⁶³⁾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미군 병력 배치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결정일 뿐 다른 나라의 개입과 참여 권한이 없다고 함으로써 이를 일갈하였다.⁶⁴⁾ 한국 정부는 존슨 행정부 당시 사전 협의 없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으며 이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인한 한미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월 23일 국무부는 포터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박정희와 ‘철군의 시기와 조건’에 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고, 3월 27일 한국정부에 철군계획을 공식으로 통보했다. 4월 20일 닉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정희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 ‘전면전’을 일으킬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하면서, 미국의 철군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⁶⁵⁾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 미군 감축에 따라 군사력 공백이 생긴다면 북한의 남침 위협이 한층 가시화 될 것이라 판단했다. 닉슨의 아시아 불개입 정책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을 북한이 이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⁶⁶⁾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북한의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63) 미국의 정책 결정이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는 주로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였다. 포터와 하비브, 그리고 스나이더와 같은 주한 미국 대사들은 미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전달받고, 이를 한국의 정책 결정의 핵심 행위자들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64) 홍석률, 2006, p. 74.

65)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23 March 1970, Def 6 US, DOS Central Files, Korea: 1970-1973, RG 59, NARA와 Letter from President Park to President Nixon, 20 April 1970, Def 6 US, RG 59, NARA, 한국 역사정치연구회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p. 414-419.

66) 박정희 정부의 인식 변화는 박정희, “1971년 신년사”, 1월 1월 (1971) 참조.

원인으로 국제연합군과 미군의 주둔을 끝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기제가 사라졌다는 불안감을 겪었을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주한 미군의 철군 소식이 들려온 후부터 “자주국방”의 의미를 “자체방어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재정의 하였으며⁶⁷⁾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자주 국방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다시 정립한 것은 안보적 불안감이 훨씬 고조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 인식의 최고점은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준비 양상을 검토해본 결과 한국이 안전 보장 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있다”고 하였다.⁶⁸⁾ 그는 197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생존 위협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바뀐 국제정세로 인해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음을 드러내었다. 요컨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북한의 호전성이 상호작용하며 박정희 정부의 자주 국방 의지를 고조 시킨 것이다.⁶⁹⁾

67) 1970년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우리는 적어도 북괴가 단독으로 무력침공을 해왔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단독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제지하고 분쇄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힘을 빨리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입니다.”라고 연설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정희, 1970, “신년 기자회견”, 1월 10일 참조.

68)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의 12월 6일 자 “국가 비상사태 선언”(http://www.parkchunghee.or.kr/#!/detailed/newspaper/2742) (검색일: 2017년 11월 14일) 참조

69) Memorandum for President from Zbigniew Brezezinski, "Your Meeting with General Brown and Phil Habib." (May 20, 1977); E.O. 12958, Sec. 3.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Memorandum for President from Harold Brown, "My Trip to Korea", (July 12, 1977); E.O. 12958, Sec. 3.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김지일, 2016, pp. 60-62; 대통령 보고,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977.3.16), EA000366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 이야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p. 31-34; 김지일, 2016, pp. 210-211.

2. 한국의 핵무장

1) 핵무장 결정시점

전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위협으로 대표되는 1968년부터 이어진 한반도의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안보 불안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1969년 닉슨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과 미군 감축에 대한 연이은 발언을 한반도에 대한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과의 협상력(bargaining leverage) 증대의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⁷⁰⁾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처음 거론된 시점이 1970년 7월 미국이 주한 미군 철수

70) 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12, No.4, (2001), pp. 53-80; 조철호, "박정희의 자주 국방과 핵개발", 『역사비평』, Vol. 80 (가을 2007), pp. 356-373; Sung-Gul Hong, "The Search for Deterrence: Park's Nuclear Option," i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p. 483-510; Peter Hayes; Chung-In Moon, 2011, pp. 46-58; Lyong Choi,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1975-76", *Cold War History*, Vol. 14, No. 1 (2014), pp. 71-90.;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3rd eds.) (New York: Basic Books, 2014); Alexander Lanoszka, *Protection States Trust? Major Power Patronage, Nuclear Behavior, and Alliance Dynamics*,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2013; Eugene B. Kogan, *Coercing Allies: Why Friends Relinquish Nuclear Plans*,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2013;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une 1978), Declassified for Release October 2005, p. 1; Lyong Choi, 2013, pp. 71-90.

계획⁷¹⁾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직후라는 점은 필연적인 결과이다(홍성걸, 2011).⁷²⁾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것이다. 실제로 1970년 여름 말과 가을에 박정희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주한미군 철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고 국방과학연구소, 무기개발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이 시기였다. 실제로 1971년 3월 27일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지고 나자 제 3차 5개년 원자력 개발 계획(1972-1976)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박정희 정부가 핵무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 3차 5개년 원자력 개발계획(1972-1976)이 1977년까지 재처리공장을 건설한다는 상세한 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이었던 최형섭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핵연료 제조와 재처리 공장, 원자력 협력 내용을 협의하였다.⁷³⁾ 실제로 미국의 하원조사소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의 무기개발 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동의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⁷⁴⁾

71) 실제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남베트남의 붕괴 후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Korea and US Policy in Asia', 1976. 1,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Box 135, Jimmy Carter Papers - Pre Presidential, 1976 Presidential Campaign Issue Office-Noel Sterrett, Clippings-Foreign Issues, Jimmy E. Carter Library and Museum. 참조.

72)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베트남전으로 인한 미군 철수와 국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핵무기 개발 옵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re,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une 1978, Declassified for Release October 2005, p. 1, www.foia.cia.docs/DOC_0001254259/DOC_0001254259.pdf. 참조

73)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pp. 170-172.

74) U.S. Congress.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 33-35, 79-80; 하영선.

박정희 정부의 핵무장 결정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책임졌던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이하 오원철 수석)의 진술이다. 오원철 수석은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 것이 1972년 부터였다고 진술했다.⁷⁵⁾ 그는 박정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요?”라고 물으며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⁷⁶⁾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무기개발위원회에게 ‘번개 사업⁷⁷⁾’이라 명명된 무기 국산화 사업과 함께 핵무기 개발을 탐색하는 임무도 맡겼다고 하였다. 오원철 수석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안하여 1972년 9월 8일 ‘보고번호 제 48호’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⁷⁸⁾

미국 하원 국제위원회의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제출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산하 무기개발위원회(WEC)가 설립되었고 1970년대 초반 무기개발위원회⁷⁹⁾는 만장일치로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⁸⁰⁾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프랑스로부터의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구입할 것을 논의한 것도 1972년부터였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철수로 비롯된 안보 위협이 박정희 정부가 핵무장을 결심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⁸¹⁾

1991. p. 148에서 재인용.

75) 『월간조선』, Vol. 2028, 2010년 1월 12일.

76)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서울: 중앙 M&B, 1998), pp. 261-262.

77) ‘번개사업’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를 목표로 M2 카빈 소총, M1 소총, M1919 기관총, 60mm, 81mm 박격포, 3.5인치 로켓 발사기 등의 생산을 계획했다. 조철호, 2000, p. 195.

78) 오동룡, “박정희의 원자폭탄 개발 비밀 계획서 원문 발굴.”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p. 190-192.

79)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말 독자적인 군수물자의 생산과 조달을 위해 설립한 군사기구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소속된 기구이다. 하영선, 1991, p. 148.

80) U.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ort, Investigation of Korea-American Relations, October 31, 197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참조.

81) U.S.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port, Investigation of Korea-American Relations, October 31, 197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2) 한국의 핵무장 추진 현황

우선 박정희 정부는 핵무장 추진의 일환으로 전술한 것처럼 1972년 핵물질의 재처리 시험 공장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처음 박정희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원자력 연구, 개발과 사용에 관한 장기계획(1968-1983)’의 주요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보다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점인 83년까지를 재처리 공장의 건설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목표하였으나 후에 계획이 2차적으로 수정되어 81년까지 재처리 공장의 설립을 완성할 것이라 목표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연구, 개발과 사용에 관한 장기계획(1968-1983)’의 일환으로써 수립된 재처리 공장 건설 계획은 당시 구체적인 형태로 수립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197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처리공장 수립 계획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5월 제 3차 5개년 원자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977년까지 재처리공장을 건설한다는 상세한 일정을 계획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같은 달에 과학기술처장관인 최형섭은 프랑스를 방문하여 핵연료 제조와 재처리 공장에 관한 프로젝트, 그리고 양국의 원자력연구소간의 협력에 관하여 산업기술개발성 장관인 프랑수아 오르톨리(Francois Xavier Ortolli)를 비롯하여 프랑스 정부 관료들과 협의하였다. 1974년 2월 19일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원자력에 관한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 서한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한국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인 태완선이 파리에서 그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에 관해 프랑스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였다. 같은 해 10월 한국과 프랑스 간의 ‘원자력에 관한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재처리 공장 수입에 관한 박정희 정부의 계획이 일차적으로 마무리 된다.

박정희 정부는 프랑스와 재처리 시설 및 기술에 대해 교섭하면서 다

Printing Office, 1978), pp.33~35, 79~80. 하영선, 1991, pp. 148-149에서 재인용

른 한편으로 벨기에와의 연료 재처리 시설을 협의했으며 캐나다와의 중수로 도입을 논의했다.⁸²⁾ 1973년 4월 그레이 캐나다 원자력공사 사장은 월성 2호기 발전소를 캐나다 산 중수로로 건설할 경우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수락하여 캐나다의 기술협력을 받아 900 메가와트 급 CANDU형 중수로를 총 4기 건설하는 ‘KC-49사업’을 협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수로 발전을 건설하면서 캐나다가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3만 킬로와트의 연구용 원자로(NRX)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 원자로는 핵연료를 태우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순도 높은 플루토늄이 포함된 ‘사용 후 핵연료’를 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⁸³⁾

핵 확산성 측면에서 CANDU 원자로의 수입이 핵 능력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유는 핵무기의 자체 개발과 중수로 방식의 원자로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CANDU의 중수로형 설계는 핵무기 개발 옵션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핵분열성 물질인 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핵무기로서 이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목적의 시설을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평화적인 핵에너지로부터 발생한 핵분열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⁸⁴⁾ 이러한 평화적인 목적의 시설로써 핵분열성 물질을 획득하는데 경수로가 중수로보다 용이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제 경수로는 1년에 한번 정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 시킨 뒤 연료를 교체하는데 반해 CANDU 형 중수로는 사용 후 수시로 핵연료를 꺼낼 수 있다. 핵연료를 수시로 교체해야한다는 점은 핵 개발의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서는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에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원자로를 열고 1년에 한 번 핵연료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때 IAEA의 감시가 집중된다. 따라서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빼

82) Bergner, 2012, p. 88.

83) 심용택, 2013, pp. 33-34.

84) Duane Bratt, 『The Politics of CANDU Export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6), pp. 19-60.

돌리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중수로는 원자로를 가동하는 와중에 수시로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고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핵연료를 뽑아내기 때문에 감시에서 벗어나기 수월하다. 이러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원자폭탄의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연료를 교체할 수 있는 중수로의 경우 운전 중 수시로 연소도를 조절함과 아울러 핵연료를 교체하여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쉽다. 따라서 핵확산의 측면에서 핵연료와 중수로의 위험도는 경수로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중수로 방식은 사용 후 핵연료로서의 플루토늄이 경수로보다 2배 이상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 능력 측면에서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다. 평화적 핵능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면 굳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중수로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수로는 우선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물과 분리하는 시설을 건설해야하고 전체 건설비용은 경수로 보다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1당 고급 양주 값에 이르는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를 감속제로 이용한다는 점도 발전 비용을 증가시킨다. 물론 중수로는 경수로와 달리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전기용량 대비 건설비가 50%나 비싸다. 연료 교체를 위한 가동 정지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일 연료 교체가 필요해 사용 후 연료 발생량이 많을 뿐 아니라 원자로 수명이 경수로의 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설계수명 30년 이전에 57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교체해야 하고 안전성 보완 비용까지 추가로 든다.

원자로 건설을 위한 부지 측면에서도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일반 경수로는 약 600m 거리 바깥에 주민 거주를 허용한다. 중수로는 이 거리가 1km에 육박함에도 발전용량이 작아 면적당 발전 효율이 경수로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중수로는 건설비 절감을 위해 격납 건물에 강철판을 덧대지 않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주민을 원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살도록 해야 한다.⁸⁵⁾ 그러므로 핵확산성이 경수로 보다 높은

중수료를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3. 미국의 비확산 노력

전술한 것처럼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와 철수,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 계획으로 인해 비밀리에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박정희 정부는 핵 개발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 모델’을 기대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단기적으로는 반대하겠지만 결국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하지 않았다. 권력 기반 설명에서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남한의 핵무기 포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요인 중에 초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의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재의 효과는 잠재적 핵보유국의 핵 기술 자급도, 초강대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 잠재적 핵보유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초강대국의 군사적 개입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상당한 부분의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미국에게 기대고 있던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이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를 포착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과 닿아있다. 1974년 4월 인도는 캐나다에서 구입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확보하고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을 통해 핵폭탄 제조에 성공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경각심을 자극했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⁸⁶⁾

실제로 포드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과 협박 뿐 아니라 설득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캐나다와

85) 박종운, 2015.

86) 심용택, 2013, pp. 34-35.

벨기에 등 한국에게 핵 시설과 기술을 팔려고 했던 나라들에게 압력을 가해 취소시켰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에게도 NPT 가입을 압박했다. 포드 행정부는 베트남전 종료와 전술 핵무기를 비롯한 주한 미군의 핵심 전략의 철수 결정으로 인한 약화된 대한 안전 보장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⁸⁷⁾

1)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차단

미국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핵개발을 제재하고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바로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의 판매 차단,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원자로 판매 차단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포드 행정부는 프랑스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남한의 관계자들에게 재처리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과학 기술부 장관, 외무장관,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의 순으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착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포드 행정부의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압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의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제재하는 것과 재처리 시설 도입을 제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7월 고리 1호기에 이어 2호기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웨스팅하우스를 이 원자력 발전소의 발주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였다.⁸⁸⁾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한 차관과 차관보증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87)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미국의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이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다. CIA, "Political Perspectives on Key Global Issues," Confidential, NLC-29-42-7-1-6 (Declassification 2008/06/20), Jimmy Carter Library(이하 JCL).

88) 과학기술처, 『과학 기술 연감, 1976』, (서울: 과학기술처, 1976). p. 106. 하영

미국의 상원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위의 제제에 부딪혀야 했다. 이 기관은 한국의 고리 2호기 건설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7천 9백만 달러의 차관과 1억 5천 7백만 달러의 차관보증에 대한 신용대출을 박정희 정부가 NPT를 비준하기 전까지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1975년 3월 20일 NPT를 비준하고 나자 핵안전협정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국 의회에 알린 후 25일 지난 후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국 전력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다.⁸⁹⁾

그러나 1975년 말 미국 정부는 한국이 재처리 공장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박정희 정부에게 경고했다. 재처리 시설을 제재하기 위해 차관협정을 다시 한 번 지연시킨 것이다. 미국은 우선 2억 9천 2백만 달러에 준하는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는 한국의 두 번째 원자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과 이에 필요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⁹⁰⁾

이러한 재정지원과 수출 허가 취소에 이어 캐나다가 CANDU형 원자로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한국에 무기판매를 중단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한 압력으로 1976년 1월에 프랑스로부터 재처리공장을 수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교섭을 통해 한국이 캐나다 산 원자로에서 추출한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캐나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요구하였다.⁹¹⁾ 또한 미국산 원자로 고리에 필요한 핵연

선, 1991에서 재인용.

89) 하영선, 1991, p. 110.

90) 이흥환,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장면』 (서울: 삼인, 2002), p. 77.

91) Development of U.S. Policy Toward Sou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February 28, 1975), Box 9, National Security Affairs (이하 Memorandum for George Spinteen from Jeanne Davis, “ROK Weapons Plans” (March 3, 1975), NSA, Ford Library KSA RG-1/Topic 14-006;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Jan M. Lodal, Dave

료수출과 재처리 승인을 연계시켜 박정희 정부를 직접 설득하려고 했다.⁹²⁾ 뿐만 아니라 캐나다 원자력 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연구용 원자로’ 판매를 철회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결국 1976년 1월말 재처리 시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⁹³⁾

결과적으로 한국이 재처리 시설 도입을 포기 하고 나자 1976년 11월 웨스팅하우스사와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1977년 1월에 이르러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적 조치도 완화되었다.⁹⁴⁾

Elliot, “Approach to South Korea on Reprocessing”(July 24, 1975), Box 9, NSA, Ford Library.

92) Approach to South Korea on Reprocessing”(July 2, 1975), Box 9, NSA, Ford Library, KSA RG-1/Topic 14-011; Memorandum for Secretary Kissinger from Jan M. Lodal and Dave Elliott, “Approach to South Korea on reprocessing”(July 8, 1975), Box 9, NSA, Ford Library KSA RG-1/Topic 14-012.)

93)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une 1978),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United States and the Two Koreas 00265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U); 한국원자력연구원 (편),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한국원자력연구원 50년사: 1959-2009』(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p. 55; Telegram to SECSTATE from Amembassy Seoul, “ROK Nuclear Reprocessing Plant: Canadian Approach”(December 16, 1975), Box 11, NSA, Ford Library KSA RG-1/Topic 14-023; 대통령 보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입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1975. 12. 13), EA000359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군원문제 등에 관한 하비브 차관보와의 면담”(1975. 12. 22), EA0003602,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엄정식, 2013a, pp. 154-156에서 재인용.

94) 자세한 내용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1978: Atomic Energy Activities, (Seoul: MOST, 1978), p. 48; Korea Times, Seoul, January 19, 1977 참조.

2) NPT 가입 압박

미국 정부는 전술한 것처럼 간접적인 경제적 제재 조치를 통한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이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스나이더 대사(Richard L. Sneider)가 과학 기술처를 방문해 재처리 사업 중단을 요청했고 프랑스에게 시설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핵확산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강경하게 NPT 가입을 압박했다.⁹⁵⁾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박정희 정부에게 ‘핵포기와 NPT 가입’을 압박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NPT가 비준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NPT 가입을 압박했고 압박 수준을 증가시켰다.

미국의 핵 개발 포기과 NPT 가입 압박의 핵심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포기과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의 교환이었다. 상술한 것처럼 미국 안보 공약의 약화는 베트남전 종료와 지미 카터 당시 미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결정으로부터 비롯됐다. 미 정부는 약화된 대한(對韓) 안전 보장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을 촉진 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전략적 상황이 변하고 미국이 주한 미군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시킬 경우 한국이 NPT 당사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으로 핵무기 개발 시도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⁹⁶⁾

이러한 핵 포기에 대한 압박의 정황은 우선 1968년 최규하 당시 외

95) 주성돈,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 제도주의적 분석,” 『정부와 정책』 (2014), Vol. 6, No. 2, pp. 81-82.

96)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대사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핵 공격 등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했다. 포터 주한미대사가 “한국 쪽에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질질 끌다가 ‘불쾌한 그룹(Unpleasant Group)’에 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하자 최규하 외무장관이 “가장 맹방인 한국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귀하가 무슨 대한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튿날인 6월29일 포터 대사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각서를 휴대하고 최 장관을 다시 찾았다. 정부는 포터 대사가 가져온 각서의 문구 수정을 거쳐, 1968년 7월1일 포터 대사에게 조약서명에 대한 훈령을 보냈다고 통보했다. 미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수단으로써 1968년 7월 5일 날짜로 안보 보장의 내용을 각서의 형태로 제시했다. 그 주된 내용은 “NPT 가입이 주한미군의 핵무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한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무 이행을 제약치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NPT나 1968년 6월 19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나 또는 관련된 미국의 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의무 이행 보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미국이 현존하고 있는 안전보장 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임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NPT 조약 교섭 중에 이미 명백히 한 바 있으며 조약의 서명 시에 또 천명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 또한 분명히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⁹⁷⁾ 또한 미국은 앞서 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한국의 조약 비준이 주한미군의 가상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 방위 공약의 이행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핵무기 비 보유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97)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3』, MF, 2010-0088-0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1972년 5월 17일 윤 차관과 미 대사관 소속 언더힐(Francis Underhill) 공사의 면담에서도 미국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한국이 가급적 빨리 비준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⁹⁸⁾ 이러한 미국의 ‘핵 포기’와 NPT 가입 압박’은 1974년 5월 인도의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더욱 더 가속화된다. 인도의 핵실험 성공이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극 저지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핵무기 관련 부품들의 거래내역을 치밀하게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사업이 포착되었다. 워싱턴의 정보 분석가들은 한국이 10년 이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확보할 것이며 이는 북한과 일본에게 심각한 정치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포드 행정부가 박정희 핵개발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경이었다. 그 증거로 인도 핵 실험이 성공하기전인 1974년 11월까지 포드 행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캐나다로부터 원자로 구매를 시도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⁹⁹⁾ 1975년 2월 최종적으로 포드 행정부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함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 안보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므로 개발을 막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포드 행정부는 한국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NPT에 가입하는 것이 ‘극도로’(extreme) 중요하다는 입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¹⁰⁰⁾ 포드 대통령은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와 대한정책의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난 수년간 어떤 수준으로 약화되었는가?”와 “박정희가 안보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¹⁰¹⁾ 이는 당시 포드 행정부가 박정희의 핵 개발을 미국의 대한

98) 『NPT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3』, MF, 2010-0088-0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99) Memorandum for General Scowcroft from David Elliot, "Sale of Canadian Nuclear Reactor to South Korea," National Security Council, November 18, 1974, GFL, DDRS.

100) Memorandum of Conversation, August, 1975,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c.d. Korea (7)-(14), GFL.

101) Memorandum for General Scowcroft from W. R. Snyder, "Your

안보 공약 약화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1975년 2월 26일, 외무차관, 방교국장¹⁰²⁾,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주한 미 대사, 허위츠(Edward Hurwitz) 참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면담요록에서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는 한국정부가 68년에 이미 서명한 NPT에 대한 비준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¹⁰³⁾ 뿐만 아니라 1975년 3월 초 키신저(Henry A. Kissinger) 국무장관은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 뿐 아니라 소련, 중국, 미국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역에 중대한 불안정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노력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박정희의 의지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사실로 인하여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의 노력을 단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⁰⁴⁾

Meeting with Our Ambassador to South Korea," March 26, 1975,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Country Fil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Box 9-a.b, Korea (1)-(6), GFL.

102) 1955년 2월부터 1977년 7월까지 존속되었던 외무부 산하의 국으로써 아래로는 국제연합과, 국제기구와 조약과를 두었던 방교국의 장.

103)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104) 1974년 12월 11일 키신저가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전문(1975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II: 미국 포드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 (하)』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편찬 문화과, 2008), p 55. pp. 66-67;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pp 69-70; Tae Hwan Kwak and Wayne Patterson,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60-1984." Matray, James I. "Yur-Bok Lee and Wayne Patterson, Editors.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82*. (University: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6.); Joo-Hong Nam,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LSE Monographs in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2. No. 4 (1987), pp. 1054-1055; 차상철. "박정희와 1970 년대의 한미동맹", 2010, pp.331-356, p 344-345.

결과적으로 미국은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의 1단계 사업인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을 하도록 강요해온 미국은 급기야 이를 거부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고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 핵 개발의 종료는 미국에 의해 안보와 관련된 원조 중단 등을 통한 압력이 행사되고 핵우산 제공 등으로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설명되었다.¹⁰⁵⁾

105) 황지환, 2009, pp. 59-83. 참조

Ⅲ. 한국의 대응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 결정 과정에서 부처별 입장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박정희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결정 구조가 국가 통제적, 국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의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원과 의지 표명이 우선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1960년대 말에 수립된 ‘원자력 개발 장기 계획 수립’ 및 ‘원자력 발전소 도입 주체 선정과정’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의 정책 결정자들, 원자력 관련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의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원자력 정책의 경우 경제적 · 군사적 · 과학기술적 · 전력자원적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방적인 구조가 되기는 더욱 힘들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정에서 계획이나 노형 선정과 같은 업무는 상공부(한국전력)의 주관이었고, 안전규제와 안전관리, 건설 및 운전허가와 같은 기술적 측면의 결정은 과학기술처의 주관으로 원자력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했다.¹⁰⁶⁾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결정 과정 또한 관계 부처별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부처별 입장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관계 부처의 NPT 비준에 관한 의견은 1970년부터 NPT 비준 시기인 1974년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NPT에 서명한 이후 1975년까지 가입을 보류해왔다. 기밀 해제 문건에서 드러나는 1970, 1974, 1975년의 NPT 가입 비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 변화는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106) 주성돈, 2014, pp. 85-87.

우선 1970년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보면 ‘핵능력 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각 관계부처의 의견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각 부처의 고려 사항이 북한의 위협과 미국 측의 안보 보장과 같은 안보적 측면에 국한되어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1970년대 초 박정희의 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위협인식이 최고조였음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 가입에 대한 논의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초 국방부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과 한국 내의 전술 핵무기 및 핵탄두의 배치가 북한과 상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NPT의 비준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중앙정보부의 경우 미국의 핵 보호를 군사 면에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조치의 선행을 기다려 비준해야한다고 하였다. 원자력청은 NPT 당사국이 아닌 중국의 핵 위협이 존재하고 중국, 북한 간의 핵 물질 등의 비밀제공 문제는 사찰할 방도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 비준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70년의 각 부처는 중국 및 북한의 미 가입에 따른 중국의 북한 원조 가능성,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주요국의 미 가입을 비롯하여 핵물질의 비밀 제공에 대한 사찰 방법이 없고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비준을 보류해야하는 이유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각 부처는 미, 영, 소 3개국에 의한 핵우산 결의문이 한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요컨대 1970년에 박정희 정부는 NPT를 가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가입을 보류하는 것에 합치된 의견을 보였다.¹⁰⁷⁾ 각 관계부처는 NPT 가입을 보류해야한다고 각 관계부처에서 만장일치로 판단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핵 능력 증진에 대한 의견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고 핵

107) “핵확산 금지조약 비준 문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개발로 인해 자체적인 방위를 해결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NPT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를 받아들이 이유가 없었다.

기밀해제 문건 상에서 NPT 가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단순히 안보적 측면이 아닌 핵 능력 증진과 관련된 기술적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4년이다. 외무부는 1974년 1월 31일자 문서상에서 NPT 가입 시의 제 3국과의 신규 원자력 협정 체결이 편할 뿐 아니라 타 체약국 및 IAEA로부터 원자력에 관한 정보 입수, 교환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외무부의 의견이 각 부처에 수신된 시기가 IAEA가 NPT 가입을 통해 선진국과의 핵 기술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IAEA로부터 NPT 가입을 통해 핵기술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뒤 NPT 가입을 핵능력 증진의 수단으로써 고려하게 된 것이다.¹⁰⁸⁾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가 보고번호 제 48호를 통해 ‘원자 핵 원료 개발 계획’을 검토한 시점이 72년부터 73년 사이라는 점에 74년부터 핵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NPT 가입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부터 과학기술처(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상공부(한국전력)와 합동으로 핵연료 기본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철저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72년부터 73년 시기에 핵무기의 종류 및 개발 방향, 핵 물질 보유를 위한 개발 방향, 플루토늄 생산 방안 등에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위해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의 채용, 기술자의 해외 훈련, 원자력 전공 대학생의 교육을 계획했으므로 핵 기술에 대한 협력을 위한 NPT 가입이 매력적인 옵션으로 등장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74년에 NPT 비준 가부 및 시기에 관하여 의견을 새로 취합하는 과정에 과학기술처에서 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NPT를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시기상으로 더욱 의미를 지닌다.

108) “핵확산 금지조약 비준 문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1974년 5월 29일 외무부에 회신된 문서상에서 국방부는 조약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소련, 중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력이 핵보유국 수준 도달 시까지 비준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한국의 평화지향 정책의 관점에서 비준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핵 보장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과학 기술처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력협정 제 12조에는 양도되는 핵 물질 등에 대하여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협정”이 이미 체결 발효 중이고 74년 4월 1일자로 체결 의뢰 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협력 협정” 제 5조에서도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견지에서는 조약의 비준에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NPT를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감시 의무나 제약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 물질의 이용 측면에서 NPT를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1975년에 이르러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통해 핵능력 증진을 기대한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75년 1월 17일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관한 관계관 회의에서는 NPT 비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부처 간 의견을 다시 교환했다. 이 회의 내용을 통해 각 관계 부처에서 NPT 가입이 핵능력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물질 혹은 기술 제공 면에서도 NPT 가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방교국장은 NPT 비준에 관하여 미국과 영국과 같은 우방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당면한 캐나다로부터의 원자로(CANDU)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중앙정보부 또한 NPT 비준을 안보와 핵전략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능력과 군사적 이용능력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NPT 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독자적 핵능력 개발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NPT 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핵 개발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처는 이미 IAEA 규정, 한, 미 한, 불, 한, 캐나다 간 협정상의 안전조치를 수락하고 있으므로 NPT 비준으로 인한 제약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했다. 국제경제국장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CANDU 원자로의 도입이 한국의 전원개발 계획상 중요하고 핵에 관한 기초적 능력 배양이 장기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NPT 가입을 통해 관계 국간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핵능력 강화 방안으로 NPT 가입안 채택

박정희 정부는 핵능력 강화 방안으로 NPT 가입안을 채택했다.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초까지 NPT 가입을 망설이다 NPT 가입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나서 NPT 가입을 다시 검토 한 후 이를 선택한 것이다. 1975년 NPT 가입 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두 번째 논의가 일어났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중 하나이다.

NPT 가입은 이론적으로 약소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 우선 핵 기술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데 NPT 가입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핵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를 은폐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합법적인 원자력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영역에 국제사회와 IAEA의 관심을 위치시키고 비합법적인 영역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게 핵무기 개발을 제재당한 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암암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왔다. 드러내놓고 핵무기 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NPT를 통해 핵능력 증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NPT 가입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1월 17일 관계부처 회의 후 75년 1월 20일 ‘핵확산 금지조약 비준 문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에서 NPT 가입을 결정한 요인이 핵 능력 증진에 있음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이르러 박정희 정부는 원자력 기재나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NPT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핵 확산 금지조약의 비준문제”라는 제목으로 1975년 1월 20일 조약과에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원자력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모두 NPT 가입국이므로 NPT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평화적 목적 이외로 원자력 기재나 기술을 그들로부터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약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비준을 미루어 오다가 비준을 서두르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최근 미국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핵물질 제공을 거부하려는 압력에서 발단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 “조약비당사국에 대하여 선진원자력 국가가 핵물질 기타 핵 관계 기술협력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¹⁰⁹⁾ 이는 NPT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핵물질 및 기술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박정희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핵에 관한 기초적 능력 배양이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NPT 가입을 통하여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민간용 핵 기술과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기술이 핵무기 개발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단순히 보편적인 의미의 평화적 핵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상에서 이러한 ‘핵능력 증진’이 정확히 안보적 측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측면은 외교적 측면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기 내용에서 명시하는 ‘기초적 능력 배양’이 의미하는 것이 군사적 측면의 핵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교국장은 한국의 핵능력 개발을 위하여

109) “핵확산 금지조약 비준 문제”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 4. 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NPT 가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보부장은 NPT 비준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핵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능력과 군사적 이용능력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NPT 가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가 발생했던 것이 1975년이었던 점도 한국의 NPT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73년부터 75년까지 재처리 공장 구입에 대한 프랑스와의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언이 없었다. 그에 반해 1975년 경 핵무기에 대한 두 번째 논의가 발생했을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에서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원로나 장비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이 한국이 특정 시기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었다고 말한 것과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핵무기 개발까지도 포함하여 안보의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¹¹⁰⁾ 이를 보았을 때 박정희 정부의 NPT 가입 요인은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 및 핵 물질에 대한 기술적 축적의 접근성을 증가를 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기밀 해제 문건에서 드러나듯 관계부처는 70년부터 75년의 시기에 이르기 까지 안보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PT 비준을 보류해왔으나 NPT 가입이 핵 능력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순간부터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NPT 가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능력 증진'이 얼마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보여준다.

110) 하영선, 1991, p. 149.

IV. NPT 위장막 아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압박

이 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 이후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실천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인지한 미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핵포기를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압박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도 핵무기 제조능력의 강화를 크게 핵 물질의 확보, 운반 체제, 핵 개발 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며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을 결정한 요인에 핵능력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 점을 반영하듯 실질적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1. 핵무기 제조 능력 강화

핵무기(Nuclear Weapons)는 핵분열성 물질, 기폭장치, 운반 수단 모두를 지칭한다.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나뉘며 이를 운반하는 수단은 미사일과 항공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의 완전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물질 획득, 기폭장치 개발, 핵폭발 장치 제조, 핵실험, 소형화와 전략화 과정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¹¹¹⁾ 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획득을 위해서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플루토늄 생산, 재처리 기술, 우라늄 농축기술의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¹¹²⁾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 강화를 모색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성 물질, 무기 제조, 운반 체계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플루토늄 생산, 재처리 기술, 우

111)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핵물질 확보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112)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2071&path=201609 (검색일: 2017년 4월 10일)

라늄 농축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하려고 시도하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우선 “민간용 핵 프로그램의 전용, 공개된 시설을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방법, 핵물질이나 무기 자체를 훔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한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뿐이다.¹¹³⁾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구매하거나 훔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¹¹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핵무기와 연관된 필요한 지식, 혹은 기술과, 실제적인 핵분열성 물질, 즉 농축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이 필요하다. 이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을 만드는 목적의 시설을 만들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핵 발전 시설로부터 만들어진 핵분열성 물질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¹¹⁵⁾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으로부터 군사적 프로그램으로의 플루토늄을 은밀히 전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핵폭탄 제조 기술과 민간용 핵기술이 중복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기술과 가장 광범위한 지원 산업이 필요하며 핵물질을 장치하고 생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든다.¹¹⁶⁾

113) 한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는 구매하거나 훔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훔치는 것은 이미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로부터 핵무기의 주요한 부분 혹은 완성된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핵 기술과 능력의 발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114) 하영선, 1991, pp. 129-130.

115) 전략 특수 핵물질의 획득을 위해 대개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전용하거나 전용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 인도는 1974년 핵폭발 실험을 위해 첫 번째 길을 따랐으며,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는 이들이 이미 원심분리법이나 제트노즐법의 농축과정이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무기 생산을 위한 플루토늄이 전용 가능한 민간 연구 원자료를 짓는 것이 이 방법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법은 핵물리학자와 공학자를 교육함으로써 핵 능력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캐나다와 미국은 수천의 인도 핵물리학자와 공학자를 교육함으로써 민간용 원자력개발 계획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중 몇몇은 후에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군사용 핵 개발계획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세 번째 방법은, 합법적인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으로 병행되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IAEA의 감시체계가 한정적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시를 승인된 안전한 핵 시설에 대해 집중하게 하고 동시에 비밀리에 수행되는 핵무기 개발 시설에 대한 감시를 피하게 한다. 합법적인 부문이 더 광범위하고 클수록 비합법적인 영역을 숨기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은 분명하다.¹¹⁶⁾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중적 사용 핵 기반 시설 강화, 핵물질 확보, 탄도미사일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 강화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NPT 가입 또한 이러한 위장의 목적으로 NPT를 가입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116) Chauncey Starr, "Nuclear power and weapons proliferation: the thin link," *Proc. American Power Conference*, Vol. 39 (April 18, 1977), pp. 418, 426-427; Carl Walske, "Nuclear Electric Power and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Winter 1977), pp. 94-106; 하영선, 1991, pp. 128-129.

117) Bergner, 2012, pp. 88-120.

1) 이중적 사용(dual-use) 핵 기반 시설 강화

(1) 원자력 시설의 증강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 각 관계부처의 가입 결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원자력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NPT 가입국들로부터 원자력 기재나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NPT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로부터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가입을 결정했던 것처럼 가입 후 이를 실천하려는 직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1975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은 캐나다 국무장관 앨런 맥이첸(Allan MacEachen)에게 한국이 핵무기 개발의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했다.¹¹⁸⁾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1976년 1월 26일에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포기했다. 그러나 NPT 가입 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통해 재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예로 1976년 12월 재처리시설 도입을 주관 해왔던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를 분리해 핵연료 개발 공단을 설립하였다. 원자력연구소의 주재양 부소장을 초대소장으로 임명하고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 핵연료 가공시설, 조사 후 시험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재처리 핵심시설을 직접 만드는 대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체사업은 성공대로 추진되어 1978년 10월에 핵연료가공시설이 준공되고 1979년 5월에 우라늄 정련, 전환 공장 기공식이 예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도입하지 못했던 캐나다의 연구용 원자로(NRX) 대신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기장치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장치개발부가 이를 추진했

118) Washington Post, January, 30; 하영선, 1991, p. 112.

는데 1973년 캐나다와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교섭할 때 이미 설계와 기술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에 1978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1981년경까지 원자로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¹¹⁹⁾

(2) 연구 인력의 확보

박정희 정부는 또한 기술적으로 충분히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과학, 기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 뿐 아니라 발전소 분야의 공학적인 측면을 보조하고 발전소 원할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에서 국내 핵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원자력 개발 계획을 통해 이러한 연구 인력의 지식이 축적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인력으로써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UN이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300명의 기술자와 500명의 과학자를 필요로 한다.¹²⁰⁾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6년을 기준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기술적 인력 600명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의 원자력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250명의 과학자 중 56명이 핵 과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재원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전문가의 수는 1986년까지 9천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주요 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 학생수가 240명으로 미래의 핵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기울였다.¹²¹⁾

119) 심용택, 2013, pp. 252-253.

120) United Nations, *Effects of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 of the Acquisi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Weapons*, UN Document A/6858 (New York: United Nations, 1968), p. 38.

121) 하영선, 1991, pp. 144-147.

2) 핵물질 확보

핵무기 생산 초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장벽은 적당한 양과 질의 분열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핵무기의 설계나 제조가 어려운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의 분열물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무기의 생산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생산에 적합한 분열물질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가 있다. 우라늄 233이나 우라늄 235의 경우 생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물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통로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핵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약소국의 경우 플루토늄 239를 통한 핵 개발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핵보유국이 플루토늄 239를 얻으려 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피하여 상업적인 원자력 체계를 다양화 시키거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나 재처리공장과 같은 전용설비를 건설해야 한다.¹²²⁾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 후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는 사실은 핵 개발의 일환으로 추구되어진 것이라고 해석될 당위성이 있다.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인 기폭장치의 개발까지 모두 완료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라늄 농축 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기술, 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우라늄 농축 기술이 증가하면 플루토늄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자력 산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이 핵무기 개발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

박정희 정부는 전술한 것처럼 NPT 가입 이후, 핵관련 기관 시설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 했을 뿐 아니라 1976년 12월에는 한국핵연료 개발공단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연료봉 생산을 기획하였다. 국내 우라늄 탐

122)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Washington, D.C.: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77), pp. 229-233; 하영선, 1991, pp. 141-142.

사를 위해서 한국자원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국산 우라늄을 정련하여 옐로우 케이크¹²³⁾를 만들기도 하였다.

옐로우 케이크 정련과 같은 우라늄 농축과정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더불어 핵무기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전술한 것처럼 순도 높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천연 우라늄에 포함된 U-235 추출을 위해 불순물을 처리한 노란색의 우라늄덩어리를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른다. 이는 불소를 혼합하여 분말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순도 99.5%의 우라늄이 된다. 그중에서 0.72%에 불과한 U-235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농축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농축과정이 핵무기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특성 때문에 이는 박정희 정부의 지속적인 핵 개발 의도를 보여준다. 실제적으로 당시 박정희 정부가 선택 가능한 기술 중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원심분리법이었다. 고도로 농축된 우라늄 30kg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농축 공장의 용량은 연간 6000에서 7,000kg SWU 정도가 되며 이러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자본은 대략 1억 2천만에서 1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¹²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해로 인해 한국의 재처리 시설의 도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천연 우라늄을 가공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¹²⁵⁾

3) 탄도 미사일 강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한 핵무기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핵폭발 물질의 제조나 확보만이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의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강화 시도를 했다는 일련의 내용은 핵무기 제조 기술 강화

123) 자세한 내용은 민병원.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2004), pp. 131-133. 참조

124) 하영선, 1991, p. 129.

125) 민병원, 2004, pp. 131-134.

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약에 가입을 함으로써 핵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적 협력이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가 NPT 가입 후 핵탄두의 운반체가 될 수 있는 핵미사일의 개발을 위해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핵능력 증진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잠재적 핵보유국에서는 비밀반입, 핵 운반 능력이 있는 항공기, 비유도 로켓, 크루즈미사일, 해상공격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6개의 운반체계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¹²⁶⁾ 1978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F-4D/E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1980년대에는 F-16과 같은 항공기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박정희는 특히 탄도 미사일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핵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²⁷⁾ 전술한 것처럼 미사일의 개발은 핵탄두의 운반체로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¹²⁸⁾ 핵 개발과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¹²⁹⁾ 실제로 비밀 해제된 CIA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도 ADD의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핵 개발의 일부로 판단했다.¹³⁰⁾

126) Lewis A. Dunn and Herman Kahn, "Trends in Nuclear Proliferation, 1975-1995. Projections, Problems, and Policy Options," *United States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1976), pp. 79-86.

127) 기존의 연구들은 박정희 정부의 미사일 개발을 핵 개발의 일부로 분석했다.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고양: 길산, 2002), pp. 114-121; Seung-Young Kim,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12, No. 4 (2001), pp. 61-63. 등을 참조

128) 심용택, 2013, p. 250.

129) Se-Young Jang,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4, pp. 514-517.

130) DNSA, 1978, 00265 GWU: Memorandum for Bob Kimmitt from

박정희 정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능력의 확보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미사일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미사일이 다른 기술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조 기술과 생산 장비를 들여오는 방법을 통해 이를 확보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한 회사로부터 관성유도장치 제작기술을 도입하고 세 번째로 록히드사로부터 추진제 제조시설을 구입해 옮겨오으로써 설비를 확보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로부터 추진제 제조기술을 이전받음으로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려고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항공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76년 말까지 지대지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¹³¹⁾ ADD는 미사일 개발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에는 미사일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전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무기 체계를 모방하여 지대지 미사일의 체계 설계 및 제작능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2단계에서 모방개발된 미사일 성능을 개량해서 무기 체계화하기로 했다. 그 후 제 3단계에서 사정거리 500km의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미사일 개발 사업의 목표였다.¹³²⁾

우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 획득을 위해 나이키 허큘러스를 생산하는 맥도널 더글러스 사와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유도탄 설계용역을

Wisston Haydon, “Interagency Study on Trends in LDC Arms Production and Implication” (January 31, 1980), NLC-21-6-7-2-3, JCL.

131) 구체적으로 74년 말까지는 중거리 무유도 로켓을 개발, 76년 말까지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79년 말 까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했다.

132) 국방과학연구소, 1989, p. 146; 엄정식, 2013a, p. 514. 구체적으로 ADD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순차적 연구 개발을 계획했다. 1 단계로 유도 조정 장치 개발에 있어 국산 기술로 유도 조정 장치를 개발한 후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유도 조정 장치와 교체하여 시험하는 것이었다. 2단계로 추진 기관의 개발이었는데, 추진 기관 역시 개발 후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에 교체 결합하여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순을 거친 후 최 종 단계에서 개발한 유도 조정 장치, 추진 기관, 비행체 등을 조립하여 100%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김지일, 2016, pp. 79-80;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2016, pp. 214-261.

계약했다. 그 후 약 6개월간 양쪽 기술진은 180만 달러 규모의 예비 설계 작업을 함께했다. 뿐만 아니라 관성 유도 장치 제작 기술은 영국의 한 회사에서 도입하고 프랑스의 한 회사를 통해 추진제 제조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다. 유도 조정 장치 개발을 우선 국산 기술로 한 후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유도 조정 장치와 교체해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료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추진 기관의 개발 역시 개발 후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교체 결합하여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발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유도 조정 장치, 추진 기관, 비행체들을 조립하여 미사일 개발을 총 4단계에 걸쳐 완료하고자 했다.¹³³⁾ 록히드사의 추진제 설비를 확보하고 설비 나이키-허큘리스 외형을 모방했기 때문에 빠른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홍재학 박사도 맥도널 더글러스 사와의 공동연구와 록히드의 추진제 설비가 백곰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¹³⁴⁾

1976년 11월 대전기계창으로 위장한 유도탄 연구소가 완공되면서 연구개발을 마쳤다. 결과적으로 77년 이전 미사일의 원형을 완성하지는 못했어도 기술적으로 중요한 상태를 넘어선 수준까지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물론 8차에 걸친 비행 시험을 실시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않았다. 1차 비행시험에서는 100km 통제 범위 내에서 유도탄이 사라졌으며 2차에서는 비행 18km 이후 기체가 통제 범위에서 사라졌다. 최종 8차에 걸친 비행시험의 결과는 50%의 확률에 불과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1978년 9월 26일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통해 사정거리 180km의 지대지 유도탄 K-1 일명 ‘백곰’을 개발해 하늘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100여명이

133)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2016, pp. 214-216.

134) 홍재학, 2010, pp. 495-497; Telegram fro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ROK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 and JUSMAG-K Relationships,” January 21, 1977, Korea, Republic of, 1-4/77, National Security Affairs(6), Brzezinski Material, Country File, Kamuchea: 1/80-1/81 through Korea, Republic of: 10/77-12/78 Box 43, JCL; 엄정식, 2013.

초청된 가운데 최종 공개 발사장에서 14시 13분 34초에 책임 통제원의 카운트다운을 끝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¹³⁵⁾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의 한국을 외신들은 ‘잠재적 핵보유 국가’로 분류했다는 점이 이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¹³⁶⁾

2. 핵 개발 탄로와 미국의 핵포기 압박

전술한 것처럼 미국의 처음 핵 포기를 압박했을 때 박정희 정부는 표면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NPT를 가입했다. 한 국가가 핵 개발을 포기하려는 요인은 핵 확산에 대한 초강대국의 제재 조치와, 핵무기 개발의 드는 경제적인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초강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약소국에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형태를 띌 수 있다. 이러한 제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 대가를 높이는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단의 효율성은 그 예로 앞서 언급했던 박정희 정부의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공장 시설 도입을 제제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프랑스가 재처리 공장을 한국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미국은 프랑스의 기술이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프랑스가 무조건적인 기술이전 금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엄격한 안전 조치를 부과하는 것과 한국 정부가 수출된 시설과 이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하려는 시설을 폭발물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였다. 강화된 협의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의 협정은 수정되었다.¹³⁷⁾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재처리 시설

135) 김지일, 2016, p. 81.

136) 심용택, 2013, p. 245.

137)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Arms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curity Agreements, *Hearings on Nonproliferation Issues*, March 19, 1975–November 8, 197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p.

을 공급할 준비가 되었음을 박정희 정부에 통보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장 구입 계획을 취소하도록 박정희 정부를 압박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사가 건설하는 2억 9천 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원자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재정 지원과 수출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CANDU형 원자로를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저지할 뿐 아니라 미국정부가 한국에 더 이상의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다.¹³⁸⁾

이러한 미국정부의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자마자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 정황의 포착은 미국 정부가인도의 핵개발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대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 다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했다. 미국은 1974년 인도의 핵 실험 직후에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국가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가 핵과 관련하여 일련의 군사적인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75년경이다. 미국정부는 1975년 당시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군사적인 측면에 핵능력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취하는 제재조치로는 "정치적 비난, 핵 장비에 대한 공급 중지, 핵 기술자의 철수, 군사동맹의 파기, 핵시설의 철거, 군사력의 사용" 등이 있다.¹³⁹⁾ 이 중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 비확산 조항의 사용¹⁴⁰⁾,

271-272, 301-304, 307-313; 하영선, 1991, p. 153에서 재인용.

138) 자세한 내용은 IAEA, Information Circular/233: The Text of the Safeguards Agreement of 22 September 1975 Between the Agency, France, and the Republic of Korea: Korea News Review, Vol. 4, No. 39 (Seoul: September 27, 1975). 하영선, 1991, p. 154에서 재인용.

139) George H. Quester, "Reducing the Incentives to Proliferation," in Richard D. Lambert (ed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hiladelphia: AADS, 1997), p. 78; 조철호, 2002, p. 297에서 재인용.

핵기술 공급국과의 공동 제약 조치,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및 핵 기술의 제공 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¹⁴¹⁾

미국 정부는 원자력 관련 대체사업이 우라늄을 채취 후 핵연료로 가공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믿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로부터의 CANDU 원자로 수입, 혹은 프랑스로부터의 재처리 공장 도입을 막으려 시도했던 '기술적 형태의 제재'의 일환이다. 실제로 박정희는 미국의 연료 공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우라늄 매장량과 국제 시장 가격 등을 조사해서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¹⁴²⁾

미국은 한국이 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핵 포기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핵 포기를 압박했다는 사실은 1975년 8월 제임스 슬레진저(James Schlesinger)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경고했다.¹⁴³⁾ 군사적인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에게 제재 초지를 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포드 행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핵 관련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압력을

140) 여기서 말하는 비확산 조항의 사용이란 미국은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 이전과 관련된 비핵확산 조약, 핵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프랑스의 비핵확산 조항으로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비준된 NPT 조약이 박정희 정부가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핵 개발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정부의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제재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철호, 2002, pp. 297-298를 참고.

141) Bryan Jack, et al, *The South Korean Cases: A Nuclear Program Embedded in an Environment of Great Power Concerns*, Vol. 2, *Regional Rivalries and Nuclear Responses*, Pan Heuristic Final Report to U.S. Defense Nuclear Agency (February 28, 1978). pp. 64-76; 조철호, 2002, p. 297.

142) 심용택, 2013, pp. 253-255.

143)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2013, p. 71; Victor D.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13-114.

행사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개발을 위한 기술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핵 보유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에 대한 설득에 주력했다.¹⁴⁴⁾ 최종적으로 1975년 12월 하비브(Philip Habib)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와 스나이더 대사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할 경우 전반적인 한미안보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¹⁴⁵⁾

과거 박정희 정부의 재처리 공장 시설 도입에 대해 제재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던 것과 달리 카터 행정부는 단순히 강압적인 방법만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시도를 중지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하는 한편, 대북 핵 공격이 포함된 대규모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팀 스피리트’를 개시해 박정희 정부를 달래려고 했다. ‘한국의 핵개발 포기’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의 교환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속적인 안보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재확신도 보여 주었다. 일련의 사건들 이후로 미국은 매년 합동 군사 훈련과 국내에 적극적인 군사 주둔을 통해서 한국 안보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략 핵무기를 철수하려던 카터 대통령의 계획 취소는 또 다른 유인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잠정적으로 핵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외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70년대 후반에도 농축 우라늄 235의 공급을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원자로연료에 쓰일 농축 우라

144) 1975년 2월 포드 행정부는 한국이 핵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프랑스 정부에게 재처리 시설을 한국에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75년 박 대통령에게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두 번째 미국산 원자로(고리2)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했던 미국 수출입 은행대출도 중지시켰다. 엄정식, 2013a, p. 15; Memorandum for Kissinger from Robert S. Ingeroll, Acting Secretary, "Approach to South Korea on Reprocessing," (July 2, 1975), Box 9, NSA, Ford Library.

145) Don Oberdorfer; Robert Carlin, 2013, p. 72; 김형아,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 공업," (서울: 일조각, 2005), pp. 324-339; 차상철, 2010, p. 346.

늄의 공급을 늦추거나 핵연료 수출을 금지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 관련 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지원은 한국의 핵 기술 연구, 개발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독단적으로 미국이 반대하는 핵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과 제약요인이 너무 컸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은 완전히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

V. 결론

1. 연구 결과 정리

박정희 정부는 1971년 말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한 이후로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맡은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에 게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¹⁴⁶⁾ 오원철 수석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¹⁴⁷⁾

이러한 핵무기 개발은 다양한 단계적으로 혹은 분산적으로 시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고 해외 핵 과학자의 귀국을 기획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화적 능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는 핵 개발을 명확히 시도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행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미국의 정보망에 포착되었고, 1974-1975년 미국의 경제지원 철회 압박과 핵우산 제공 약속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NPT 가입 후에도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은 지속되었다.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교섭을 통해 핵 기술을 축적하고자 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들여온 기술을 개량하여 핵 개발을 지속하고자 시도했다. 실질적인 핵포기를 의미하는 NPT를 가입하고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기밀해제 문건 상에서 드러난 박정희 정부 관계 부처의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 후 오히려 핵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입을 결정했다. 각 관계 부처는 NPT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 NPT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개발에 오히려

146) 중앙일보특별취재팀, 1998, pp. 261-262.

147) 오동룡, 2003, pp. 190-192.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는 NPT 가입을 통해 핵능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고려한 점을 보여주듯 실제로 가입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정희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평화적 핵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NPT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위장막 삼아 핵개발을 지속했다. 단순히 핵물질 확보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의 운반체가 될 수 있는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NPT 가입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의 핵 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처럼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인 축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2. 연구함의: NPT 체제의 악용 가능성

동맹국으로부터의 핵우산 제공과 NPT 가입은 한 국가의 핵 개발의 도를 필연적으로 잠식시키지 않는다. 왈츠(Waltz)의 주장처럼, 국가가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의 부분이 안보와 결부되어 있다면, 국제정치 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안보상의 이유로 핵무기를 추구하던 국가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의 확대억지(extended deterrence)는 약소국에게 핵무기 개발의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외부적 균형(external balancing)으로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도 핵무기 보유국과의 동맹을 통해 핵 억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대억지에 의해 핵 억지를 확보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동맹의 포기(abandonment)라는 신뢰성의 문제를 겪는다.¹⁴⁸⁾ 뿐만 아니라 핵무기는 비단 자국의 안보만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선진기술을 통해 경제 발

148) Sagan Scott. D, 1996b, p. 57;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pp. 466-468.

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NPT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 무기 보유 및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에 NPT 가입을 통해 핵무기의 포기가 냉전시기와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강대국의 분명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상대국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 억지력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약소국의 경우 자국 스스로의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비확산체제의 감시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의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려는 경향을 종종 보인다. 실제로 비확산체제가 확립된 1960년대 말 이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국가들은 대체로 국제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소국(weak or small powers)이었다.¹⁴⁹⁾

핵 비확산체제는 약소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시키는 경우 큰 제약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NPT가 핵물질의 이전과 핵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어렵게 하여 핵 확산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 국가의 핵 보유에 대한 정치적 야망까지 제어하지는 못한다.¹⁵⁰⁾ 오히려 NPT 가입 후 핵물질을 염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NPT 가입은 오히려 핵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¹⁵¹⁾

뿐만 아니라 IAEA는 NPT 회원국의 탈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NPT의 규정 1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특별한

149) 황지환, 2009, pp. 61-63.

150) 조동준, 2011, p.47. 국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원인을 저술한 글로는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3 (1996), pp. 54-86. 참조

151) 조동준, 2011, p. 58; Dong-Joon Jo; Eric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pp. 175-185 ; Matthew Fuhrmann, "Spreading temptation: Proliferation and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2009), pp. 30-32; Sonali Singh and Christopher R. Way,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2004), pp. 872-879.

사태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위협할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약에서 탈퇴 할 수 있다.¹⁵²⁾ 조약상에도 명시되어 있듯 NPT는 탈퇴를 선언한 회원국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회원국의 행동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증강의 관점에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NPT 체제로는 특별한 감시활동을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NPT 가입을 통해 회원국이 핵 능력 증진을 도모한 후 핵 개발을 목적으로 이를 탈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이 된다.

또한 NPT는 그 조약내에서 회원국이 핵개발을 위하여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핵분열성 물질은 핵무기로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목적의 시설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으로 평화적인 핵에너지로부터 발생한 핵분열성 물질을 사용함으로써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무기 생산을 위한 플루토늄을 우회¹⁵³⁾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민간 연구 원자료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핵분열성 물질의 획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원자로는 물론 핵무기만을 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시설보다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비싸지만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민간 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추구되어 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핵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이러한 민간 핵 프로그램을 통해 핵 기술을 습득할 경우 이러한 기술의 이중적인 사용(dual-use)이 가능하다. 실제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캐나다와 미국은 핵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인도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도와주었고 결과적으로 이들 중

152) 이와 관련된 내용은 "If it Decide that Extraordinary Events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로 IAEA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irc/Others/infirc140.pdf> (검색일: 2017년 11월 14일)

153) 실제로 핵분열성 물질의 우회(diversion)에 대한 방지가 IAEA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몇몇이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였다. 또한 합법적인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병행되는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장할 수 있다. 이 경우 IAEA의 감시를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의 승인된 안전한 핵 시설에 집중하게 하고 동시에 비밀리에 수행되는 핵무기 개발 시설에 대한 감시를 피하게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부분 즉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더 광범위하고 크게 진행할수록 비합법적인 영역을 숨기는 것은 더 쉬워진다.¹⁵⁴⁾

요컨대 NPT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원자로를 건설, 운영할 수 있고 원자로 연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폐연료봉을 저장, 재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폐쇄적 연료 순환과정'은 NPT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안겨준다. 또 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생산에 전용될 수 있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주어진 권리를 악용, NPT를 준수하는 듯이 보이도록 하면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자원들을 수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 핵물질을 염가로 반입하는 것¹⁵⁵⁾, 혹은 기술협력을 통한 핵능력배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NPT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NPT 가입이 핵 능력 증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가능성이 충분하다.¹⁵⁶⁾ 그러므로 NPT 체제 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박정희 정부의 사례는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할 때 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NPT 가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NPT 가입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4) Bratt, 2006, pp. 19-60.

155) NPT는 핵 비보유국에게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 혜택을 제공(제 5조)하고 있다. 핵무기의 비 보유국에 대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폭발 장치에 대한 비용을 저렴화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156) 황지환, 2009; Du Preez, J., "Half Full or Half Empty? Realizing the Promis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rms Control Today*, Vol. 36, No. 10.

참 고 문 헌

<1차 자료>

1. 한국 자료

- 『[한·IAEA간의]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안전조치협정 보조약정의 개정, 1』, MF, 2012-0060-1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1』, MF, 2010-0087-4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2』, MF, 2010-0087-43,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3』, MF, 2010-0088-0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V.4』, MF, 2010-0088-0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V.1 사전준비』, MF, 2010-0087-4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1차. Geneva 1975.5.5-30 V.2 결과보고』, MF, 2010-0087-41,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 V.2 3차 준비회의』, MF, 2010-0038-09,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 V.3 제2차 평가회의』, MF, 2010-0038-1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 V.4 제안 및 회의요록』, MF, 2010-0038-11 ,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대통령 보고,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977.3.16) , EA000366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 외국 자료

Declassified Document Reference System. "Korea 1975-1979." Department of State Telegram, 23 March 1970, Def 6 US, DOS Central Files, Korea, 1970-1973, RG 59, NARA.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United States and the Two Koreas 00265, 00311,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onated Historical Material(33), Zbigniew Brezinski Collection, Box 41, Jimmy Carter Library.

Korea and US Policy in Asia', 1976. 1,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Box 135, Jimmy Carter Papers - Pre Presidential, 1976 Presidential Campaign Issue Office-Noel Sterrett, Clippings-Foreign Issues, Jimmy E. Carter Library and Museum.

Letter from President Park to President Nixon, 20 April 1970, Def 6 US, RG 59, NARA.

National Security Affairs, Box 9, 10, 11. Gerald Ford Library.

National Security Affairs(1), Box 3, Jimmy Carter Library.

National Security Affairs(6), Box 43, Jimmy Carter Library.

National Security Affairs(26), Box 1, 2, 5, 65. Jimmy Carter Library.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n Security Archive, RG-1/Topic 14-005, 006, 011, 012, 023 (KISON documents). Gerald Ford

Library.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Library Catalog (NLC). Jimmy Carter Library.

Memorandum for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Your Meeting with General Brown and Phil Habib," May 20, 1977, E.O. 12958, Sec. 3. 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Memorandum for President from Harold Brown, "My Trip to Korea", July 12, 1977, E.O. 12958, Sec. 3.6,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olitical perspectives on Key Global Issues," Confidential, N.C-20-42-7-1-6(Declassification June 2008), Jimmy Carter Library.

"Task for the CIA from PRM On Korea." April 28, 1977. CIA-RDP79R00603A002500020022-2(Declassification February 200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II.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2005.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une 1978, (Declassification October 2005).

2.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박정희. 1968a. "원주 치안 회의 유시." 1월 6일.
 ----- 1968b. "서울대학교 졸업식 치사." 2월 26일.
 ----- 1968c. "1968년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 2월 27일.
 ----- 1968d.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2월 28일.
 ----- 1968e. "향군 제9차 전국 총회에서 행한 유시." 2월 28일.
 ----- 1968f. "예비군 창설식 유시." 4월 1일.

- . 1968g. “6. 25 동란 제 18주년에 즈음한 담화문.” 6월 25일.
- . 1968h. “국군의 날 유지(건군 제 20주년 기념).” 10월 1일.
- . 1969. “신년사.” 1월 1일.
- . 1970. “신년기자 회견.” 1월 10일.
- . 1971. “신년사.” 1월 1일

<2차 자료>

1. 논문 및 단행본

- 히데야, 구라타. 2002. “박정희 ‘자주국방론’과 미일 ‘한국조항’,” 문정인 외. 『한일공동연구총서(4)』, 서울: 아연출판부.
- 국가기록원. 2008a.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II: 미국 포드 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상)』,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8b.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II: 미국 포드 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하)』, 대전: 국가기록원.
- 국방과학연구소. 1989. 『국방과학연구소 약사: 제1권』,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서울: 국방부.
- 과학기술처. 1976. 『과학 기술 연감, 1976』, 서울: 과학기술처.
- 金江寧. 1995.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 현안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Vol. 35, No. 1.
- 김용직 (편). 2005.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렴. 1990. 『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서울: 중앙일보사.
- . 1997.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회고록』, 서울: 중앙 M&B.
- 김지일. 2016. “한국의 자주국방과 미사일 개발.” 『전략연구』, Vol. 23, No. 3.
- 김진기. 2011.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

- 총』, Vol. 58.
- 김태우. 1991. “핵무기 비확산조약과 핵의 남북문제.” 『국방논집』, Vol. 14.
- 김창수. 1998. “한미관계, 종속과 갈등.”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 푸른숲.
- 김형아.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 공업』, 서울: 일조각.
- 남기정. 200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Vol. 22.
- 류광철. 2005. “NPT 체제의 미래: 제 7 차 NPT 평가회의 결과 및 평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모세스, 요나톤; 크누트센, 투르본. 2011. 『정치학 연구 방법론: 자연주의와 구성주의』, 서울: 을유문화사.
- 민병원. 2004.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 박병인; 이수훈. 2013.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유라시아연구』, Vol. 10, No. 3.
- 박원근. 2011.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데탕트와 박정희』, 서울: 논형.
- 박홍영; 허만호. 2002.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 안보정책의 제약과 기회 고찰: 북한의 NPT 가입 및 탈퇴 시기 (1989-1993) 사례.” 『국제지역연구』, Vol. 11, No. 3.
- 신재근. 1992. “핵에너지와 핵확산금지조약.” 『국방논집』, Vol. 17.
- 신옥희. 2010. “데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 박정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가?” 『세계정치 14(데탕트와 박정희)』.
- 심용택. 2013.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비화: 19780926』, 서울: 기파랑.
- 안동만, 김병교, 조태환. 2016.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대한민국 최초

- 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 이야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 양성철: 문정인. 1988. “제 1부: 한·미 안보관계의 재조명: “푸에블로호” 사건의 위기 및 동맹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단일호』.
- 엄정식. 2013a. “미국의 무기이전 억제정책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미사일 개발전략.” 『국제정치논총』, Vol. 53, No. 1.
- 2013b. “이문사회학편: 박정희 정부의 자주적 무기개발과 무기도 입 다변화 전략.” 『공사논문집』, Vol. 64, No. 2.
- 오동룡. 2003. “박정희의 원자폭탄 개발 비밀 계획서 원문 발굴.”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 오원철. 1991.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서울: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 1996. 『(경제비사)한국형 경제건설 :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 윤민재. 2010. “푸에블로호 사건과 한미관계.”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Vol. 85.
- 이문항. 2001.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 이종길. 2002. 『두개의 한국』, 고양: 길산.
- 이흥환. 2002.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장면』, 서울: 삼인.
- 장성욱. 200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및 해체 사례 연구.” 『동아시아연구』, Vol. 11.
- 전재성. 2004.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6, No. 1.
- 정옥임. 2006. “국제 레짐의 한계와 패권: 미 부시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 『국제지역연구』, Vol. 16, No. 2.
- 조갑제. 2007. 『박정희 10권(10월의 결단)』, 서울: 조갑제닷컴.
- 조갑제. 2009.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62년 생애의 62개 장면』, 서울: 기파랑.
- 조동준. 200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윤영관·신성호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파주: 한울.

- . 2010. “비확산과 핵확산: 이론적 시각.”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 . 2011.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KWP)』, Vol. 27, No. 1.
- . 2014.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 . 2015.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하영선 편.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조철호. 2000.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한미관계.” 『평화연구』, Vol. 9.
- . 2001. “박정희 핵외교와 한미관계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 2002. “이중적 핵력개발정책과 한미 핵 갈등.” 『아세아연구』, Vol. 45, No. 4.
- . 2007.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핵개발.” 『역사비평』, Vol. 80.
- 주성돈. 2014.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정부와 정책』, Vol. 6, No. 2.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1998. 『실록 박정희』, 서울: 중앙 M&B.
- 차상철. 2010. “박정희와 1970년대의 한미동맹.” 『군사』, Vol. 75.
- 최강. 2005.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하영선. 1991.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Vol. 28. 나남.
- 한국원자력연구원 (편). 2009. 『풍부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한국원자력연구원 50년사: 1959-2009』,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미관계연구회 (역), 1986. U.S. Congress. 『프레이저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서울: 실천문화사.
- 한인택. 2011.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국과 국제정치』, Vol. 27, No. 1.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8.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II: 미국 포드대통령 도서관 소장 기록물: 1970년대 한미관계 (하)』,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편찬 문화과.
- 황지환. 2009.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Vol. 14, No.1.
- . 2012.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30, No. 3.
- 홍석률. 2001.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Vol. 113.
- . 2006. “닉슨 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 『내일을 여는 역사』, Issue 26.
- 홍재학 등. 2010.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서울: 엠에스디미디어.
- Bergner, Jonathan D. 2012. "Going Nuclear: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 Matter?," *Comparative Strategy*, Vol. 31, No. 1.
- Betts, Richard K. 1977. "Paranoids, Pygmies, Pariahs & Nonproliferation." *Foreign Policy*, Issue. 26.
- . 1993.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 Bratt, Duane. 2006. *The Politics of CANDU Export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unn, George. 2003.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History and Current Problems.” *Arms Control Today*, Vol. 33, No. 10.
- Cha, V. D.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oi, Lyong. 2001.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1975-76." *Cold War History*, Vol. 14, No. 1.
- Coe, Andrew J., and Jane Vaynman. 2015. "Collusion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7, No. 4.
- Dunn, Lewis A.; Kahn, Herman. 1976. *Trends in Nuclear Proliferation, 1975-1995. Projections, Problems, and Policy Options*, United States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 Du Preez, Jean. 2006. "Half Full or Half Empty? Realizing the Promis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rms Control Today*, Vol. 36, No. 10.
- Frankel, Benjamin; Zachary S. Davis. 1993.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Theory and Policy." *Security Studies*, Vol. 2, No. 3-4.
- Fuhrmann, Matthew. 2009. "Spreading Temptation: Proliferation and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 Gleysteen, William. H. 2012.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urtov, Mel. 1996.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nd Future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Nuclear Standoff." *Pacific Affairs*, Vol. 69, No. 1.
- Han, Sung-Joo. 1978. "South Korea 1977: Preparing for Self-Reliance." *Asian Survey*, Vol. 18, No. 1.
- Hayes, Peter. 1991.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 . 1992.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uclear Issue." *Pacific Focus*, Vol. 7, No. 1.

- Hayes, Peter; Chung-In Moon. 2011. "Park Chung Hee, The CIA & The Bomb." *Global Asia*, Vol. 6, No. 3
- Ha, Young-Sun. 1978. "Nuclearization of Small States and World Order: the Case of Korea." *Asian Survey*, Vol. 18, No. 11.
- Hong, Sung-Gul. 2011. "The Search for Deterrence: Park's Nuclear Option." i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IAEA. 1975. "Information Circular/233: The Text of the Safeguards Agreement of 22 September 1975 Between The Agency, France, and The Republic of Korea," *Korea News Review*, Vol. 4, No. 39.
- Jang, Se-Young. 2016.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4.
- Jo, Dong-Joon; Gartzke, Erik.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 Johnson, Rebecca. 2010. "Rethinking the NPT's Role in Security: 2010 and Beyond." *International Affairs*, Vol. 86, No. 2.
- Kim, Byung-Guk. 2011. *The Park Chung Hee Er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Seung-Young. 2001.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Diplomacy and Statecraft*, Vol. 12, No. 4.
- King, Gary; Robert O. Keohane;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gan, Eugene B. 2013. *Coercing Allies: Why Friends Relinquish*

- Nuclear Plans*, Ph.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Kwak, Tae-Hwan; Wayne Patterson. 1986.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60-1984." in Yur-Bok Lee; Patterson, Wayne (eds.), *One Hundred Years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882-1982*, University,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Lanoszka, Alexander. 2013. *Protection States Trust? Major Power Patronage, Nuclear Behavior, and Alliance Dynamics*,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 Lee, Chae-Jin; Sato Hideo. 1982. *US Policy Toward Japan and Korea: a Changing Influence Relationship*. Praeger Publishers.
- Lieberman, Peter. 2001. "The Rise and Fall of the South African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 Litwak, Robert S. 1984.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he Pursuit of Stability, 1969-197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 Joo-Hong. 1986. *America's Commitment to South Korea: the First Decade of the Nixon Doctrine*. London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riam, Sharan B (2nd ed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Nye, Joseph S. 1981. "Maintaining a Non-Proliferation Regime," in George H. Quester (eds.), *Nuclear Proliferation*,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Oberdorfer, Don, and Robert Carlin. (eds).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77. *Nuclear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Washington, D.C.: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

- Pilat, Joseph F. 1992. "Iraq and the Futur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Roles of Inspections and Treaties." *Science*, Vol. 255, No. 5049.
- Platt, Jennifer, 2005. "Evidence and Proof in Documentary Research," in John A. Hall and Joseph M. Bryant (eds.), *Historical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Purkitt, Helen E.; Burgess, Stephen F.; Liberman, Peter. 2002. "South Africa's Nuclear Decis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 Purkitt, Helen E.; Burgess, Stephen Franklin. 2005. *South Afric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Quester, George H. 1997. "Reducing the Incentives to Proliferation," in Richard D. Lambert (ed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hiladelphia: AADS.
- (eds.). 1981. *Nuclear Proliferation: Breaking the Chain*. Vol. 35, No. 1,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avenal, Earl C. 1971. "The Nixon Doctrine and Our Asian Commitments." *Foreign Affairs*, Vol. 49, No. 2.
- Sagan, Scott D. 1996a. "Proliferation Pessimism and Emerging Nuclear Powe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2.
- 1996b.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 Schoeman, Stefanus J. 2009. "South Africa'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me (Excerpts from Amb. Schoeman's

- Presentation," International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JPI Peace Net, Vol. 2009, No.12.
- Shim, Sangsun. 2013. *The Causes of South Korea's Nuclear Choices: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Singh, Sonali, and Christopher R. Way. 2004. "The Correlates of Nuclear Proliferation: A Quantitative T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8, No. 6.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 Thayer, Bradley A. 1995.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Util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ecurity Studies*, Vol. 4, No. 3.
- United Nations. 1968. *Effects of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e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 for States of the Acquisi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se Weapons*, UN Document A/6858, New York: United Nations.
- U.S. Congress. 1978.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Sub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1977. Subcommittee on Arms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curity Agreements, *Hearings on Nonproliferation Issues*, March 19, 1975-November 8, 197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lske, Carl. 1977. "Nuclear Electric Power and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3.

- Waltz, Kenneth. 1995. "Peace, Stability, and Nuclear Weapons."
IGCC Policy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 Wing, C. 2007. *Nuclear Weapons: The Challenges Ahead*,
Washington, D.C.: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 신문자료

- 『월간조선』, Vol. 2028, 2010년 1월 12일.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87. Vol. 92. No. 4.
Washington Post. 1976. January 30.

3. 인터넷 자료

- “국가 비상사태 선언” (<http://www.parkchunghee.or.kr>) (검색일: 2017.
11. 14)
- "IAEA"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ocirc/Others/infirc140.pdf>) (검색일: 2017. 11. 14.)
- "CPBC NEWS"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2071&path=201609) (검색일: 2017. 4. 10.)

Abstract

The Analyzation of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Reason to Join the NPT

Kyungmin Joo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llowing study will review upon the NPT joining proces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fter 1968.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during the 1970s of the Park administration was continually viewed upon as an important research agenda due to its particularity and the significant impact that it has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Northeast Asia.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decis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 to commence nuclear development has been highly evaluated as an strategic choice for 'promoting self-defense' in a rapidly changing situation due to the detente atmosphere. A number of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the rationale behind Park's nuclear development compared to that of

the administration's reason to join the NPT.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Park administration's joining of the Treaty was because of the pressure of the US and their provision of the nuclear umbrella. However, the fact that they have joined the NPT, which may seem as withdrawing from nuclear development even though they have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is quite compelling.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why the Park administration decide to join the NPT." Although the regime had signed the NPT in 1968, it has postponed the ratification, reason being that North Korea did not join the Treaty at all. In February 1975, the Ford administration had confirmed that the Park administration has entered the initial stage of nuclear development and tried to put a halt to the program.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ratified the NPT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NPT after 7 years had passed since the signature of the Treaty. Nonetheless, the Park administration covertly continued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hey had attempted to increase their efforts in obtaining reprocessing capability and enrichment facilities as well as developing ICBMs to carry nuclear weapons. These efforts show past assumptions that the Park administration aborted their nuclear program due to the pressure of the US government is not entirely valid.

This being said, the study will assert the rationale of the joining the NPT of the Park administration is the judgment that it will enhance their nuclear capabilities. Furthermore, the study will analyze the released confidential documents of Korea that has been never dealt with in past studies since 1968, to reveal factors behind the Park administration's joining of the NPT. It

will also identify whether the administration was able to make a decision in joining the NPT because of the US' commitment to national defense, provision of the nuclear umbrella, and sanction measures. If procuring nuclear weapons of a nation is par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s Waltz claimed, then there is lack of evidence for a nation to voluntarily abort its nuclear program when no other fundamental change has taken pl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us, the study will review the Park's administration's perception of the circumstance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along with measures taken by the U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focuses on the factor of joining the NPT of the Park administration that has never been thoroughly analyzed in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s nuclear development. Second, this study analyzes recently released confidential documents in relation to Korea's joining of the NPT. Third, it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cases in which the joining of the NPT did not lead to abandoning nuclear weapons for nations that have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programs within the NPT, through the case of the Park administration's nuclear development and joining of the treaty.

Keywords : Park Chung-hee, NPT, Nuclear prolifer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Nuclear development, Analyzation of historical records

Student Number : 2014-20160